

정책연구보고 2022-0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보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 책임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이윤진 서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보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22 - 01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

발행일 2022년 07월

발행인 대표이사 권한대행 남윤수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경기도는 법인의 설립·취소를 인허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법인과 단체만 해도 약 7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례적인 지도·점검 이외에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단체를 지원하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제기 이후 2021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법인과 비영리단체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에 경기도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2022년 현재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법인과 단체에 대한 현황을 알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법인과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요구영역과 범위 등을 파악하고자 경기도 최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경기도 내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조사와 계획 수립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의 재원으로 민간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단체의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행정적 협조를 아끼지 않은 경기도 복지정책과 법인지원팀과 다양한 의견 제시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법인, 비영리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7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권한대행 **남윤수**

요약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법인과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음
- 본 연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위치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비영리단체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조사,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실태조사 결과

- 경기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 법인 및 시설, 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시·군을 통해 지역 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문지 배포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설문지 업로드
 - 시·군별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전화 안내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전체 대상 기관 수의 22%가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음
- 현실적으로 단기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내용의 사업이 존재함
 - 큰 규모의 예산 추계와 경기도와 시군 간의 동의 및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매칭 사업 등은 경기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함
 - 2021년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래 처음 수행된 조사활동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향후 이 조례에 대한 홍보와 계획 수립 및 시행이 거듭되면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지원요구 영역

○ 종사자 및 사·군 담당자 역량강화

-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은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특히 법인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연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종사자들이 신청, 교육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세무·회계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방법에 있어서는 컨설턴트를 경기도에서 풀을 구성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함
- 컨설팅 영역은 수익사업, 보조금사업 개발과 운영, 지침 마련, 전문적 홍보 등에 관한 것임

○ 협의기구, 플랫폼 등 정보공유

- 법인과 단체가 유사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법인 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홈페이지 등 정보교류를 위한 온라인 장소 마련을 제안하고, 상호 벤치마킹 정보공유를 통한 자연스러운 컨설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종사자 복지증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처럼 지역 내 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들의 동아리 활동, 연수 또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았음
 - 무료 견학, 연수, 법인 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등 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상설 등
-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와 정보 교환을 위한 워크숍 등 주기적인 간담회 진행에 대한 의견도 있음
 - 종사자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와 같도록 조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요구도 많음

○ 경기도 차원 희망사업

- 법인 업무용 기자재 지원, 근로자 상담지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 목적사업과 관련한 공모사업 추진,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 법인 및 단체 대상 포상사업 등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향

1) 법인 등의 공공성 강화

□ 조례개정과 계획수립

- 지역별 지원현황에서 확인하였듯이 법인 등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지자체 조례는 경기도의 조례가 유일함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시설은 조례 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민법을 적용받는 법인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포함)은 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주체 전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 필요
-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한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내용적 측면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지역, 서비스 대상, 사업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단체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1년 단위로 사업비를 제공하고 마지막 예산대비 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이후 지원의 효과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법(평가 등)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장기 지원계획과 더불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경기도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단기계획은 3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은 3년 단위 2차(6년), 3차(9년)까지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함

2) 법인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 사업

- 경기도 31개 시·군의 법인 등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세분화하여 운영
 -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담당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교육과정을 수립
 - 공무원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담당공무원의 교육참여를 의무화하거나 교육 점수 등을 부여해야 함
 - 컨설팅 업무는 모든 경우를 컨설팅 할 수 없으므로 컨설팅을 원하는 법인, 원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과 인력의 소요비용을 한계지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종사자들 대상 교육을 따로 구성하고 권역별로 또는 법인유형, 규모별로 구분을 두고 교육을 실시
 - 북부와 남부,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재단/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로 대상을 세분하고 교육의 내용 또한 정확하게 한정된 범위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후로도 지속 훈련이 가능하도록 강사와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 수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에도 활용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작업도 필요함

□ 지원영역 확정 및 점진적 확대

- 우선은 경기도 조례 명시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함

- 조례의 영역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에서 함의를 찾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법을 통해 법인 간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기해야 함
 - 법인 유형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제안할 수 있음
 - 한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후원금 모금이나 홍보와 관련한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연중사업 공모
 - 대부분 1년 이내의 사업을 매년 연초에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1년 동안 경기도 사업을 할 수 없음
 - 연중 수시 공모를 통해 지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 3년, 5년 단위의 사업을 단체 대상으로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이 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공모 필요
- 장기적인 사업으로서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법인 근무경력을 현재는 80%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100% 모두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의견조사와 조율이 필요함
- 임금체계 통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복지 및 임금체계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이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성격의 지원인지 검토해야 함
- 공유 공간 마련
 - IT(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단체 봉사자들이 공유하면서 회계 등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대책 필요
-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 경기도에서 허가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섹션을 제공하는 방안 가능함
 - 경기복지플랫폼(<https://ggwf.or.kr>) 등 이미 구축되어있는 포털을 활용하여 법인들

의 정보를 업로드하고 지속적으로 변화 등을 업데이트 함으로써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뉴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시설과 관련한 공지까지 공유할 수 있음

○ 단체와 소규모 봉사단체를 연계하는 협의체 구성

- 근로자 사기 진작이나 복지증진 사업, 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 사업 필요

○ 복지수당 지급

- 법인 등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도 많았음.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위확대 또는 다른 형태의 수당지급 사업을 염두에 둔 의견임

□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과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 법인 등의 종사자만을 위한 무료교육, 상담 등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사업이 가능할 것임

-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의 유형별로 수련회, 연찬회 등을 계획하여 워크숍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 내 상담이 가능한 기관을 활용하여 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연계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이 가능함

○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환경인 법인 등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각 법인 등의 설립자 또는 직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기여도를 보상하는 차원의 상과 부상을 제공함
- 우수법인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과정은 법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음

3) 지원과 관리의 효율성 도모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일정기간을 두고 단위로 경기도 내 법인들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가능함
 - 연 1~2회 연찬회 또는 간담회(토론회, 정책회의) 등을 마련하고 경기도 복지정책과 등 담당부서가 법인과 관련한 정책 결정사항을 토론 및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각 법인 등을 대표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한다면 차후 공공과의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공지와 협조를 받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임

□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경기도 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의 허가권자인 도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비정기적 점검 이외 관리방안이 필요함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법인에 사무국이나 상근종사자가 없는 경우가 30%가 넘음
 -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법인 인력과 시설인력의 겸직을 인정하는 등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목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7
II 	사회복지사업 법인 등의 관리와 지원현황	9
	1. 사회복지사업 법인 및 단체 등의 관리와 지원 범위	11
	2. 지역별 지원과 관리 현황	23
III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현황과 실태	37
	1. 실태조사 개요	39
	2. 경기도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	43
	3.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75
	4. 소결	97
IV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101
	1. 연구요약 및 함의	103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 방향	108
	참고문헌	117
	부록	119

Ⅰ 표 차례 Ⅰ

〈표 I-1〉 경기도 사회복지 사업 법인 및 단체 현황 (2021. 6 현재)	4
〈표 II-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지원의 법적 근거	13
〈표 II-2〉 법인 및 시설, 단체 비교	21
〈표 II-3〉 주요 광역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지원 조례 비교	23
〈표 II-4〉 광역 지자체 법인지원 요약	27
〈표 II-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조례 내용	32
〈표 III-1〉 법인 소속지역	43
〈표 III-2〉 법인 유형	44
〈표 III-3〉 법인설립시기	45
〈표 III-4〉 목적사업	46
〈표 III-5〉 수익사업	47
〈표 III-6〉 보조금 지원 평균금액(2021년도 기준)	48
〈표 III-7〉 부동산 평가액	48
〈표 III-8〉 현금성 기본재산 평가액	49
〈표 III-9〉 상근·비상근 여부	49
〈표 III-10〉 법인유형별 종사자 현황	50
〈표 III-11〉 법인대표 및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51
〈표 III-12〉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여부 (N=120)	51
〈표 III-13〉 법인유형별 시설운영 현황	52
〈표 III-14〉 명문화한 운영규정 마련여부	53
〈표 III-15〉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53
〈표 III-16〉 교육, 컨설팅 및 매뉴얼 배포 등 지원 필요여부	54
〈표 III-17〉 법인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54
〈표 III-18〉 법인의 재산관리에 어려운 점	55
〈표 III-19〉 법인 재산관리에 가장 필요한 지원	56
〈표 III-20〉 법인 인력운영에서의 어려움	57
〈표 III-21〉 법인 인력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	57
〈표 III-22〉 법인 인력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58
〈표 III-23〉 법인 등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	58
〈표 III-24〉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59
〈표 III-25〉 법인 등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의 내용 중 지원 필요영역	60

〈표 III-26〉 컨설팅 지원필요영역 61

〈표 III-27〉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필요영역 61

〈표 III-28〉 홍보 및 연구 지원필요영역 62

〈표 III-29〉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영역 63

〈표 III-30〉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필요영역 63

〈표 III-31〉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필요영역 64

〈표 III-32〉 종사자 교육훈련 방식 요구 및 의견 65

〈표 III-33〉 컨설팅 필요영역 및 방식 67

〈표 III-34〉 법인 홍보 및 연구 관련 요구 및 의견 68

〈표 III-35〉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원 요구 및 의견 70

〈표 III-36〉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 관련 의견 71

〈표 III-37〉 경기도 법인 지원 희망 사업 73

〈표 III-38〉 경기도 법인 등 지원 희망 수준 74

〈표 III-39〉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지역 76

〈표 III-40〉 설립연도 77

〈표 III-41〉 설립목적 78

〈표 III-42〉 주요사업 79

〈표 III-43〉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자 현황 80

〈표 III-44〉 중간관리자 현황 81

〈표 III-45〉 조직인력현황-직원 82

〈표 III-46〉 사업대상 83

〈표 III-47〉 사업유형 84

〈표 III-48〉 사업기간 85

〈표 III-49〉 사업예산 86

〈표 III-50〉 사업추진경과 86

〈표 III-51〉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 86

〈표 III-52〉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87

〈표 III-53〉 교육훈련 지원 필요영역 88

〈표 III-54〉 컨설팅 지원 필요영역 88

〈표 III-55〉 감염병확산 예방 지원필요영역 89

〈표 III-56〉 홍보 및 연구 지원필요영역 89

〈표 III-57〉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필요영역 90

〈표 III-58〉 회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필요영역 91

〈표 III-59〉 심리상담 등 지원 필요영역 91

〈표 III-60〉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 교육훈련 방식 의견 92

〈표 III-61〉 비영리민간단체 컨설팅 영역 의견	93
〈표 III-62〉 단체의 연구와 홍보 지원 의견	93
〈표 III-63〉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원 요구 및 의견	94
〈표 III-64〉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95
〈표 III-65〉 경기도 단체 지원에 관한 요구	95
〈표 III-66〉 경기도 단체 지원 희망 수준	96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Ⅲ-1〉 운영 중인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평균(개소) 52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I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경기도에는 '21년 6월 현재 법인 380개 민간단체 374개소 등이 설치되어 복지 사업 수행
 - 경기도의 설립 허가를 통해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은 총 184개에 이릅니다
 - 경기도 복지국 소속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경기도 또는 시군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인과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필요
 -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민간이 시설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음
 -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설립 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 인가, 임원 임면보고, 감사의 추천 등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되었음¹⁾
 -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별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 등을 근거로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법인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의 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과 접근이 필요함(윤희숙 외, 2017)²⁾
- 복지서비스 공익사업 수행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관리 부재
 -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구성된 단

1) 2010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 윤희숙(2017),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체로 정의함(행정안전부, 2014)

- 경기도 민관협치과에서 주관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 심의³⁾를 통해 신청예산이 배분되고 있으며 여성, 환경분야와 함께 공동체 복지영역의 신청 비율이 높음
-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중복성, 분야와 지역 간의 형평성 고려하여 사업보조금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보조금 사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제도는 부재함

〈표 I-1〉 경기도 사회복지 사업 법인 및 단체 현황 (2021. 6 현재)

(단위:개소)

구분	법 인				민간단체	계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계	234	43	175	8	319	779
수원시	16	3	37		55	111
고양시	13	1	5		24	43
용인시	16	2	9	1	14	42
성남시	15	4	22		24	65
부천시	5	3	12		16	36
화성시	17	2	7	1	5	32
안산시	9	1	5		27	42
남양주시	10	1	4	1	6	22
안양시	3	5	17		20	45
평택시	7	3	5	1	13	29
시흥시	9	2	6		9	26
파주시	13	1	3		7	24
의정부시	6	1	3		15	25
김포시	13	1	9	1	8	32
광주시	5	1	2		6	14
광명시	3	1	3		8	15
군포시	3	-	5	1	11	20
하남시	1	1	3		6	11

3) 단체대상 사업신청서를 모집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보조금을 지급

구분	법 인				민간단체	계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시설법인	지원법인				
오산시	3	1	3		5	12
양주시	7	1			4	12
이천시	6	1			5	12
구리시	2	-	1		2	5
안성시	9	1	1		7	18
포천시	7	1	1		2	11
의왕시	4	2	6		6	18
양평군	10	1	2		2	15
여주시	4	1	2	1	4	12
동두천시	8	1	1		2	12
가평군	4	-		1	1	6
과천시	2	-	1		4	7
연천군	4	-			1	5

*자료 : 경기도 법인지원팀 내부자료(2022)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사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소속, 집계시기에 따라 개소 수에 차이가 있음

- 경기도에서는 2020년 이후 법인·시설·단체에 대한 조사와 관리제도 진행
- 경기도는 공정복지 추진단을 구성.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 등에 환수처분(10억 4000만원), 형사고발(5건) 등을 실시한 바 있음
 - 위법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감사반과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사례별 DB구축을 통해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을 세움
 - 점검 결과는 안내사례집을 만들고 시·군과 법인 등에 배포하는 등 위법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⁴⁾

4) ①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법인 및 단체의 재무·회계 규칙 위반 사항 유무 ②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의 보조금 유용행위 유무 등

- 사회복지사업법과 민법, 공익법인법에 의거 허가·등록·신고되어 운영되는 사회복지 사업 주체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짐
 -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보조금 등)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법인 및 단체 지원 추진방안 수립 예정
 -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⁵⁾」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⁶⁾」를 개정하면서 관리의 대상에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로 확장함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법인 등(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이 실제 지방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지원의 형태, 경기도가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함

5) 2018년 제정, 2020.10.8 일부개정, 시행. 품질관리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단체로 수정

6) 2017년 제정, 2021.7.14. 일부개정, 시행. 지원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법인 등)으로 정의

2. 연구방법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최근 논의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사회복지 사업수행 사단/재단법인, 민간단체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
 -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 연구
 -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 방안 연구
 -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 운영현황 조사

- 2022년 현재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등(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조사
 - 조사방법: 사전 설계된 조사지를 경기도-시군-법인 및 단체, 행정네트워크를 통해 조사
 - 조사내용: 각 법인 및 단체의 운영현황과 조례에 중심을 둔 지원항목에 대한 필요성 등
 - 조사시점: 2022년 5월 말 현재
 - 조사기간: 2022년 5월 10일 ~ 6월 16일

○ 자문회의

- 경기도 내 설립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담당 공무원, 법제 전문가 등
- 설문지 구성 및 분석과 해석, 법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 분석 결과활용, 타 시·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 사례 공유 등

II

사회복지사업 법인 등의 관리와 지원현황

1. 사회복지사업 법인 및 단체 등의 관리와 지원 범위
2. 지역별 지원과 관리 현황

II 사회복지사업 법인 등의 관리와 지원현황

1. 사회복지사업 법인⁷⁾ 및 단체⁸⁾ 등의 관리와 지원 범위

1) 사회복지사업 법인지원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 외에는 해당 법이 기본법으로 적용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동법 동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서비스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항)
 - 즉,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지원의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있기도 함

7) 본 연구에서의 법인은 공익법인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민법」, 「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말함

8)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과 구분되는 비영리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업비를 제공받아 공익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함

-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제시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이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컬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해당하는 사업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 지원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양특례법」,「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료급여법」,「기초연금법」,「긴급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장애아동 복지지원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사업을 의미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2조 제1항)⁹⁾,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상담 및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개인과 더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법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음
-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률에는 보조금 외에도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3)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지원금 지급 기준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사업의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거나 현저히 향상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사회복지사업이 복지행정 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고, 내부 공문이나 업무지침의 형식으로 운용 중임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며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가변적이고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고정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종합하면,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사용하는 재원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지원금이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가 그 외에 별도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자치법규로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표 II-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지원의 법적 근거

종류	법적 근거
보조금	제42조(보조금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종류	법적 근거
지원금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후원금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보조금의 형식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 것이나 이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자체에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의 규정에 따름
 - 공익법인법은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제2조(적용범위)에는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제시함
- 별도로 사회복지법인 외에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정한 법률은 그 외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¹⁰⁾이 있음

10) 행정안전부가 제·개정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기본법적 역할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이 존재함
 - 비영리단체라 함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음(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비영리단체법에 의하면, 동법은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 자치행정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사업심의를 통해 연간 사업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 조향을 마련함
 - 비영리단체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관계 지자체에 등록을 하여야 함(동법 제4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음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동법 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동법 제6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함
 -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함.
 -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함(동법 제7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함(동법 동조 제3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함(동법 동조 제4항)
 -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동법 제8조, 제9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함(동법 제12조 제1항).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보조금을 환수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동법 동조 제2항)
- 관련 법률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민간 비영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도 동일한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3) 법인 등 지원의 타당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과 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받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이용료 및 사용료, 후원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법인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서비스이용료와 후원금 등은 가변적이고 상시적인 것이 아닌 특성을 가지기에 안정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재원으로 분류하기엔 한계가 있음
- 정책적 결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명시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자치분권의 확립에 일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복지 분권의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후원금과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등만으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이 재원을 조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특히 기부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보조금과 지원금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그 외의 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 주체가 다양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법령에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경우 시설 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의 차원에서 ‘법인’에 위탁 운영을 함을 원칙으로 함
 - 위탁 법인은 원칙적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수탁자의 재정능력과 전문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됨. 다만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이렇듯 사회복지법인 등은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공익법인 또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분류되며 원활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보조금은 관련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청, 교부,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외에도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개별 보조사업 근거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등을 따르도록 함
 - 그 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후원금 및 사업수입금에 대해서도 클린카드를 도입하거나 각 시도가 운영 중인 보조금 전용카드와 사용을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후원금 및 사업수익금 관리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받고 있음(사회복지시설 안내, 2022)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역시 비영리단체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련 법률의 적용을 함께 받음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및 관련 단체들이 시설과 서비스 제공 사용하는 각종 재원은 그 사용과 처리가 명확하도록 세부적 자원 사용 원칙 및 방안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 사회복지법인 재정 지원에 있어 현재로서도 일차적인 근거는 명확하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¹¹⁾
 -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내 사회복지법인 등의 역할과 지원 필요성

-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고유 복지사업으로 구분되며 사업의 재원이 다름
 - 대부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일정한 국고보조율이 정해져 있으며 국고 보조율에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이 확정됨(이봉주 외, 2017)
 - 지방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지원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액과 매칭 시키는 국고보조금 사업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시행하는 복지 사업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함

11)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후술함

- 최근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중 인건비가 약 12%에서 1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이봉주 외, 2017)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에서 사회복지비는 전체 예산의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재원, 오영삼, 2018). 또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의 89.3%는 국고보조사업인 반면에 지자체 자체 사업은 9.7%에 불과함(이재원, 오영삼, 2018)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영역별 비중을 보면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다문화 공공시설 지원액이 94%~99% 로 대부분 공공 부문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이봉주 외, 2017)
 -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의 기부 및 후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는 현실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이봉주 외, 2017)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전체 재정의 9.1%, 보조금이 83.7%로 보조금이 대부분인 현실 또한 확인할 수 있음. 기부금이 주로 모집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하여 보조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보다는 전국적 규모의 아동 대상, 노인대상 등 법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당 연구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기부를 받은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휴면예금관리재단,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영역인 기초생계지원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두어야 함
- 사회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과 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자체 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위탁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국고보조금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정부의 다양성, 나아가 지방자치의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복지 프로그램 설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사업 운영함으로써 복지 생산의 주체로 기능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의 근거가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 다양성, 창의성 등이 반영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규정 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법률은 필요한 상황임
 - 더욱 다양화되는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복지 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은 존재함

- 지방정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할 때 지원의 내용, 대상범위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보조금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음
 - 한편,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곳도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함(민법 제32조).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민법의 규정이 아닌 특별법으로서 민법과 중복되는 규정이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 적용함
 - 지방정부에서는 법인들이 특히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지원에 있어서도 지원 요건, 환류 및 평가 등의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을 전제하여야 함

- 종합하면 공공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수요와 범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인(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공으로부터의 지원과 관리의 영역설정을 위한 수요를 확인하고자 함
 - 법인 등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보조적 지원은 어떠한 방향에서 가능할지 제시하고자 함

〈표 II-2〉 법인 및 시설, 단체 비교

구분	인격			비영리민간단체 ¹²⁾	시설	
	법인					개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회사	공익법인, 특수법인				
허가·등록·신고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신고)	
주체	법인(法人)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개인 (個人)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목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함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만을 수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 사업 수행	
수익사업 가능여부	수익사업 가능 수익은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이외 사용할 수 없음					
종류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¹³⁾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 구분	
사업근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사업범위	사회복지사업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담당,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및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이용자(생활인) 대상 직접사업	

구분	인격			개인	비영리민간단체 ¹²⁾	시설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회사	공익법인, 특수법인	공익법인, 특수법인			
정의	해당 법률에 의해 정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재원 또한 민간에서 조달되는 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명칭	비영리법인 명칭 사용 무관하나, 통상적으로 공익법인 명칭 사용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등 명칭 사용 불가		
설립허가 기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 허가 -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등록 행위만으로 설립	시·군에 설치신고	
관리·감독주체	주무관청 (법인설립 허가 기관), 시도지사 허가			없음	시·군·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가능		가능	가능		
기부금대상단체	해당		가능	가능		
벌칙조항	형사법, 과태료, 양벌규정 있음		있음	없음		

12) 비영리민간단체는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하며 이는 민법에서 법인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는 것과는
다름

13) 사회복지법인 또한 엄연한 구분으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형태가 가능하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을 별도 구분하였음

2. 지역별 지원과 관리 현황

1)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 및 관리 현황

□ 광역지자체 법인 지원 현황

-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키워드로 하여 대법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지원하는 조례를 검색한 결과 총 1,640개의 조례가 나타남
- 직접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나머지 지자체들은 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제정한 상황임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불문하고 해당 지자체들은 별도로 사회복지관의 설치,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명시한 곳은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정도임
 -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의 방안으로 법인으로 전환을 명시하고 있음

〈표 II-3〉 주요 광역지자체 사회복지법인 지원 조례 비교

구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지원 필요 사항 규정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명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 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 운영시설의 지원

구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강원도 개인운영 사회복지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 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부 지원 받지 않는 3년 이상 운영한 개인 설립 운영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 제외)
지원 내용	법 제6조 지원사업 1.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2.법인 등의 컨설팅 업무 3.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4.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5.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6. 법인 등의 근로자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7.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8.그 밖에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설치 지원 기능 보강 지원 입소 및 이용자 대상 위문금품 지원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계획	지원을 위한 계획 3년마다 수립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없음	없음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의무 있음. 도지사는 경비 지원 가능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없음	실태조사 실시함

출처: 각 해당 조례

□ 경기도 조례의 특징

-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임

- 동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조례 제1조)
 - 지원대상은 경기도지사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임(조례 제2조)
 - 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법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조례 제4조, 조례 제5조)
-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기도 조례의 특징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 제1조는 조례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으로 범주화 하고 있음
 - 그러나 제2조 지원대상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까지로 대상이 확장되었음
 - 법인과 단체, 시설은 각각의 특성을 가지며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제6조 지원사업의 내용은 보다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의 목적과 함께 그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3항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음
 - 법인 등 근로자의 심리상담 지원은 위의 다른 항목들과 그 크기가 다른 미시적인 사업명이 제시되고 있음
 - 제9조 포상에서는 “사회복지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에 포상함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정한다고 되어 있음
 - 이를 기반으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의 대상이 되는 법인 등의 경우를 정확히 명시하고 포상의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음
- 경기도의 조례 제정/개정 사례가 타 시·도에 선행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최초의 조례인 만큼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실가능성과 지속성, 구체성을 담보하여 지원방안에 대한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

□ 타 시도 조례

- 서울특별시 2017년 5월 ‘서울특별시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시설지원 근거를 마련함
 - 동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함(조례 제1조)
 -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조례 제3조)
 -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시설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할 의무가 있음(조례 제4조)
 - 공공요금 등 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조례 제5조). 보조금은 동 법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실태조사를 임의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조례 제6조)
- 강원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2014년부터 제정하여 운영 중임
 - 동 조례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함(조례 제1조)
 - 1) 사회복지사업법 요건을 충족하고, 2)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3)국가에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비, 운영비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정의하고, 4) 3년 이상 자체 운영한 시설로 한정하되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제외함(조례 제2조 및 제4조)
 -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조례 제5조)
 -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시설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조례 제6조)
 - 도지사는 시설 거주자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으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음(조례 제8조)
- 제주도는 2012년부터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조례명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조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동 조례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리 보장,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전문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정책의 수립·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조례 제1조)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사회복지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 종사자 등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제주도가 노력할 사항을 명시함(조례 제4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조례 제2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조례 제3장), 사회복지시설 위탁(조례 제4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조례 제5장)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며 사회복지법인 등에 관한 지원은 동법 제4장 ‘사회복지시설 위탁’ 의 절에 유사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조례 제24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및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종류별·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한편,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및 대수선, 장비 보강 등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고(조례 제26조),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에게 명절, 연말 등에 위문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조례 제26조의 2)

〈표 II-4〉 광역 지자체 법인지원 요약

	경기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보조금 유무	-	o	-	o
보조금 지원 요건	-	별도 요건 없음	-	동법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야 함
기타 지원 유무 및 종류	보조금 지원 명시 규정은 없고 종사자 교육훈련, 연구 지원, 복지증진 등 사업 지원의 형식	보조금 지원 이외에 없음	보조금이라는 형식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사업 예산 지원의 형식	보조금 지원 이외에 없음
비고	보조금 지원의 현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별도 지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 권장함

출처: 각 해당 조례 참고

- 그 외에 경기도, 경상남도/북도, 전라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간접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 직접 지원의 형식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필요 경비 지원을 통해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임
 - 위 조례들의 주요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법인·단체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현황

□ 지자체별 조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단체법) 이외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운영 중임

지역	조례 명	지원대상
대구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운동사업 - 자율방범대 - 매니페스토 교육사업 - 지방자치발전 학술단체 및 공익사업 연구단체 - 시민의식 계도 활동 사업 - 독도사랑 실천 운동 사업 등
부산 (연제구)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 - 인구늘리기 사업 -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등
경기 (연천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지원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 추진 - 한탄강 세계지질 공원 홍보 및 관광 홍보 등
경기 (시흥시)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인 행사 -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익사업 -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경남 (함양군)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방식 -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공익 행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 행사·사업 - 함양군의 홍보에 기여한 실적이 증명된 경우

지역	조례 명	지원대상
경북 (군위군)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국가, 도 및 군의 정신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전남 (완도군)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지역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사업
전북 (완주군)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조례	- 인구늘리기 사업 - 우리지역 바로알기 사업 - 출향인사, 재외동포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 - 국기사랑 및 지역사랑 운동 추진 등
충북 (단양군)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	-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
(보은군)	보은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은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

- 대구광역시는 ‘자치행정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모두 지원함
 - 공익활동사업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활동이 주목적인 사업을 말하며,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조례 제2조)

- 대구사랑 시민운동 사업
- 자율방범대 활성화 사업
- 매니페스토(manifesto) 교육 사업
- 지방자치발전 학술단체 및 공익사업 연구단체 지원 사업
- 시민의식 계도 활동 사업
- 독도사랑 실천운동 사업
- 청년 지도자 사회공익활동 사업
- 통일안보 및 평화통일 촉진 사업
- 한민족 후원 및 교류협력 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역 정착지원 사업
- 과거사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 월남 이북5도민 지원 사업 중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를 2019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동 조례의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대상과 일치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을 요함(조례 제2조)
- 연제구는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5조)

-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
- 인구 늘리기 사업
-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사업
-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사업
- 국가상징물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구민화합·공동체정신회복사업
-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태·환경보전 활동 사업 및 에너지 절약사업
- 다문화 새터민 지원 생활정착 지원 등 사회통합사업
- 재해·재난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등 사회 안전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회복지와 관련한 사업들이 다수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해당 조례에 의하여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조례 제6조)

○ 연천군은 2021년 5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 지역복지 활동 및 소외된 이웃 지원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내 생태·환경보전 및 홍보 활동 사업
-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지질관광 홍보 활동 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
- 군 선양 및 지역사랑 등 군민화합과 공동체 정신회복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완도군은 2016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동 조례에 의하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군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군민 토론회, 국내 견학 등을 추진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경비를 지원함(조례 제4조)
 - 완주군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지원 사업, 인구 늘리기 사업, 우리 지역 바로 알기 사업, 출향인사, 재외동포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국기사랑 및 지역사랑 운동 추진, 지역내 환경정화 활동 사업, 내 고장 특산품 홍보 및 판촉 사업, 향토인재 발굴 및 지원사업, 4대악 근절사업 및 범죄 예방 사업, 군민화합 및 공동체 정신회복 사업의 경우 지원하도록 조례에 마련되어 있음
 -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형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조례 제5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함(조례 제6조 및 제7조)
- 군위군은 2016년 ‘군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 중임
 - 지원사업은 국가, 도 및 군의 정신운동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 군민화합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사 및 사업,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사업임
- 단양군은 2018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 대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조직 발전과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퇴임(퇴직) 및 유공자에게 표창 등 격려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조례 제4조)
- 보은군은 2015년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함
 - 조례 제4조에 의하면 보은군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은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 및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을 추진하는 경우, 충청북도 및 중앙단위 비영리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 견학 및 국내외 연수 등에 참석하는 경우 행정지원 및 경비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흥시는 2018년 12월 이후 ‘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며 지원 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함

-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음(조례 제5조)
 - 시흥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사업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 내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사업
 -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건강 증진, 문화·예술사업
 - 전통문화 계승 및 지역문화 육성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함양군은 2016년 5월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

-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 함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함양군의 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함양군 행정의 기본 방향 및 함양군의 주요 업무의 집행과 함양군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 비영리민간단체가 도 단위 이상의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함양군의 홍보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 개발 및 그 집행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를 명시함(조례 제4조)

〈표 II-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관련 조례 내용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비영리단체법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을 하는 해당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지원 형식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임
비고	-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고 명시하여 임의적임. 지역사회복지 사업을 비롯하여 공익활동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등을 주로 지원하고 행정지원도 병행함 - 지원 배제 조항은 거의 존재하지 않음

출처 : 각 해당 조례 참조하여 연구자가 정리

3) 소결

- 지방자치단체는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와 복지분권의 측면에서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육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상당부분 필요한 부분임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조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명시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가 유일하였음
 - 그 이외의 광역지자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법인 전환까지 이행기의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사회복지 관련 근로자 지원 등의 목적에 부수적으로 시설지원이 조례에 내용으로 삽입
 - 기초지자체들은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시설 필요 경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주로 군 단위에서 복지분야 사업의 성격보다 지역사회 내 공익행사 및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함
 - 조례의 목적이 사회복지 관련 사업과는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지역 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익행사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보조금 지원 요건으로 사업계획서를 요하는 지자체는 완주군, 연천군, 부산 연제구 세 곳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이후 성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언급은 없음
 - 민간단체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소액이라도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요건과 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지자체는 함양군 한 곳에 불과함
-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을 명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례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지원 자체가 임의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아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에서 진화된 측면을 볼 수 없음

- 향후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금 지원, 인프라 지원 등 지자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더욱 명확히 하여야 함
 - 지원 조건, 대상, 방법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의 경우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시설,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의 범위가 상당히 넓음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의 조건을 한정할 필요성이 존재함. 예를 들어 연도별 지원사업의 개별화, 지원 방법의 다양화, 지원 대상 배제 요건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 또한 함께 명시하여 재정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며 비영리단체나 법인인 운영하는 시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
 - 적용받는 법과 목적사업,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이 다른 세 가지 기관이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시하는 지원 사업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임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지원을 받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각각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지침으로 지원과 평가를 받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 중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복지제도까지 모두 적용받고 있으므로 이제 시작하는 법인 지원 사업 수준의 지원은 효과적이지 않음

- 따라서 조례상의 지원 대상자를 모두 포함할 수 없고 시설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제외하거나 적어도 경기도가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비영리공익법인은 공익법 제13조에 의거 해산 시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III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현황과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2. 경기도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
3.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4. 소결

Ⅲ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현황과 실태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현황과 실태조사

□ 조사대상

- 2022년 5월 현재 경기도에 소재를 두고 31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과 단체

구분	법 인			민간단체	계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계	184	187	9	374	754

- 조례에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운영주체
로서의 법인과 단체와 같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본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하였음
- 최초 실태조사임을 감안하여 법인과 단체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음

□ 조사방법 및 기간

○ 조사지 구성 및 내용 논의

- 실태조사에 필요한 설문지를 구성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성 검토
- 조례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법인에서 기대하는 지원의 내용을 파악함

일정	회차	참석자 및 소속	논의사항
2022. 4. 11. 2022. 4. 20.	1차, 2차	최*혁 (경기도 장애인시설연합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대상범위 - 설문에 필수 포함내용 - 실태조사 실시 방법 및 시기 - 설문지 초안 내용 검토
		서*원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송*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김*수 (경기도 복지정책과)	
		손*학 (경기도 복지정책과)	
2022. 5. 4.	3차	이*준 (사회복지법인 백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검토 및 조사 내용
		김*숙 (사회복지법인 해든솔)	
		엄*은 (사회복지법인 예가원)	
		권*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장*주 (사회복지법인 꿈을 키우는 집)	
손*학 (경기도 복지정책과)			
2022. 5. 24	4차	배*숙 (초록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내용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방안 논의
		강*원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봉사회)	
		김*환 (대한적십자사 재난대응봉사회 경기도지사협의회)	
2022. 6. 24.	5차	박*호 (사회복지법인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경기도의 법인 지원 방안 논의
		박*식 (사단법인 고양시장애인연합회)	
		이*학 (사회복지법인 창인원)	
		윤*영 (사회복지법인 희망나누리)	
		이*경 (사회복지법인 평안의 집)	
		정 * (사회복지법인 무지개동산)	
		송*창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김*실 (재단법인 남양주시복지재단)	
		이*무 (평택대학교)	
		양*혜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수 (경기도 복지정책과)			

○ 조사방법

-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시·군을 통해 지역 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문지 배포
 - 설문지를 포함한 공문 시달
 - 우편을 통해 직접 송달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담당자가 직접 연락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설문지 업로드
- 시·군별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전화 안내

○ 2022년 5월 9일 ~ 6월 15일

○ 조사대상 총 754기관 중 약 22%에 해당하는 168개소가 응답한 내용을 분석

유형	전체 개소 수	응답 개소 수
사회복지법인	184	79(43%)
사단법인	187	36(19%)
재단법인	9	5(56%)
계	380	120(32%)
비영리민간단체	374	48(13%)

□ 조사내용

○ 조사 질문지 내용

- 조사를 위한 질문지의 내용은 법인과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현황 조사와 조례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법인 종사자 및 관계의 주관적 의견을 묻기 위한 문항을 포함시켰음
 - 특히 법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 우선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함
 - 인건비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에 관한 요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문항은 제외하였음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 외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복응답 받음

영역	설문 내용
경기도 사회복지사업 법인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 법인유형 - 설립시기 - 보조금 여부/금액 - 기본재산 현황 - 종사자 현황 - 법인(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시설 현황
법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규정 마련 여부 - 규정 교육 등 지원 필요성 - 재산관리 관련 지원 - 인력운영 지원/필요성
법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대상 경기도의 지원 필요성 여부 - 지원 영역 - 종사자 교육훈련 필요 영역 - 법인 컨설팅 지원 영역 - 감염병 예방 지원 필요 영역 - 홍보 및 연구지원 영역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영역 -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 영역 -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영역 - 지원에 관한 주관적 의견 및 요구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단체형태 - 설립시기 - 설립목적 - 주요사업 - 인력현황 - 2022년 주요사업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 -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 종사자 교육훈련 필요 영역 - 법인 컨설팅 지원 영역 - 감염병 예방 지원 필요 영역 - 홍보 및 연구지원 영역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영역 -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 영역 -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영역 - 지원에 관한 주관적 의견 및 요구

2. 경기도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

1) 법인의 일반현황

□ 법인 소속지역

-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분포는 ‘수원시’가 13.3%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성남시’ 8.3%, ‘용인시’와 ‘안산시’ 7.5%, ‘안양시’와 ‘평택시’ 5.8%, ‘고양시’ 5.0%의 순으로 조사됨

〈표 Ⅲ-1〉 법인 소속지역

(단위 : 개소,%)

지역	빈도	비율
수원시	16	13.3
고양시	6	5.0
용인시	9	7.5
성남시	10	8.3
부천시	4	3.3
화성시	2	1.7
안산시	9	7.5
남양주시	3	2.5
안양시	7	5.8
평택시	7	5.8
시흥시	3	2.5
파주시	4	3.3
의정부시	5	4.2
김포시	2	1.7
광주시	3	2.5
광명시	1	0.8
군포시	1	0.8
하남시	1	0.8
오산시	1	0.8
양주시	3	2.5
이천시	5	4.2

지역	빈도	비율
구리시	2	1.7
안성시	1	0.8
포천시	4	3.3
의왕시	1	0.8
양평군	4	3.3
여주시	2	1.7
동두천시	2	1.7
과천시	1	0.8
연천군	1	0.8
총계	120	100.0

□ 사회복지법인 유형

- 응답한 법인의 유형 비율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이 5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단법인’ 30.0%, ‘사회복지 지원법인’ 10.8%, ‘재단법인’ 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 법인 유형

(단위 : 개소, %)

법인유형	빈도	비율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66	55.0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13	10.8
사단법인	36	30.0
재단법인	5	4.2
합계	120	100.0

□ 법인 설립시기

- 법인의 설립 시기는 ‘10년이상 20년미만’이 37.5%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년 이상’ 30.8%, ‘5년이상 10년미만’ 18.3%, ‘3년이상 5년미만’ 9.2%, ‘3년미만’ 4.2% 등의 순으로 조사됨
 - 특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법인이 설립 운영된 시기가 오랜 경우가 많고 적

- 은 수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단일 목적으로 한 경우와 시설을 운영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운영자가 민간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역할을 대행하는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표 Ⅲ-3〉 법인설립시기

(단위: 개소)

법인유형	법인설립시기					전체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1	5	3	28	28	66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0	0	2	8	3	13
사단법인	3	5	14	7	4	36
재단법인	1	0	2	1	1	5
합계	5	11	21	44	37	120

□ 목적사업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목적사업의 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 26.7%, ‘노인’ 16.7%, ‘지역주민’ 5.8%, ‘아동’ 5.0% 등의 순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민원상담 사업 등으로 분석됨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으로는 무료급식, 노인복지시설 및 생활시설 운영, 노인평생교육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등으로 분석됨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으로는 아동상담소 및 아동전용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교육사업 운영 등으로 분석됨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일자리 창출활동 등으로 분석됨
 - 기타 목적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조사 및 연구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으로 분석됨

〈표 Ⅲ-4〉 목적사업

(단위 : 개소,%)

사업 분야 ¹⁴⁾	빈도	비율
노인복지사업	20	16.7
장애인복지사업	47	39.2
아동복지사업	6	5.0
영유아 복지	0	0.0
정신질환자 복지	0	0.0
노숙인 등 복지	0	0.0
지역주민 복지사업	7	5.8
기타	32	26.7
무응답	8	6.7
총계	120	100.0

***목적사업 1순위를 기준으로 분류**

1. 노인대상 사업 : 무료급식,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생활시설 운영, 노인평생교육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2. 장애인 사업 : 장애인생활시설 설치운영, 장애인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 고용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민원상담 사업 등
3. 아동 : 아동상담소 및 아동전용시설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교육사업 운영 등
4. 지역주민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일자리 창출활동 등
5. 기타 : 사회복지 조사 및 연구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 수익사업

○ 수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 중 사업의 비율은 ‘사회서비스 및 교육사업’ 과 ‘임대업사업’이 5.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 4.2%, ‘의료시설’과 ‘영농업’ 2.5%, ‘노인생활시설’과 ‘기타’ 1.7%, ‘숙박업’과 ‘식품접객업’ 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서비스 및 교육사업으로는 프로그램 수강료, 발달센터 바우처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 등으로 분석됨
- 노인생활시설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및 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시설사업으로는 경로의원 운영 등으로 분석됨
- 제조업사업으로는 경관 조명기구(LED), 문구용 종이제품, 배전반·계장제어 등을 제조하는 것으로 분석됨
- 기타사업으로는 장비대여, 주차장 운영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14) 사회복지시설 안내 세부분류에 따름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이 75.8%인 것으로 나타남
 -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은 따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으로 응답함

〈표 Ⅲ-5〉 수익사업

(단위 : 개소,%)

사업유형	빈도	비율
사회서비스 및 교육	6	5.0
노인생활시설	2	1.7
의료시설	3	2.5
숙박업	1	0.8
식품접객업	1	0.8
영농업	3	2.5
임대업	6	5.0
제조업	5	4.2
기타	2	1.7
해당 없음	91	75.8
총계	120	100.0

***수익사업 1순위를 기준으로 분류**

1. 사회서비스 및 교육 : 프로그램 수강료, 발달센터 바우처 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사업 등
2. 노인생활시설 : 노인요양 및 양로시설 운영 등
3. 의료시설 : 경로의원운영 등
4. 제조업 : 경관 조명기구(LED 등), 문구용 종이제품, 배전반·계장제어 등
5. 기 타 : 장비대여, 주차장 운영 등

□ 보조금¹⁵⁾지원 평균금액

- 법인유형별로 2021년도 기준 보조금지원별 평균금액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의 경우 ‘보조금총지원금’이 203,306천원, ‘사·군 지원금’ 90,465천원, ‘도지원금’ 21,356천원, ‘국비지원금’ 91,105천원으로 분석됨
 -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운영법인의 경우는 시설에 제공된 보조금을 법인이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임
 -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경우 ‘보조금총지원금’이 115,822천원 , ‘사·군 지원금’ 41,950

15)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는 보조금을 의미함

- 천원, ‘도지원금’ 64,653천원, ‘국비지원금’ 9,218천원으로 분석됨
- 사단법인의 경우 ‘보조금총지원금’이 52,599천원 , ‘사·군 지원금’ 26,235천원, ‘도지원금’ 17,941천원, ‘국비지원금’ 1,883천원으로 분석됨
 - 재단법인의 경우 ‘보조금총지원금’이 409,059천원 , ‘사·군 지원금’ 403,940천원, ‘도지원금’ 5,118천원, ‘국비지원금’ 0원으로 분석됨
 - 사·군 내 복지재단 등 기초지자체에서 출자출연한 재단법인은 시·군의 지원금 비율이 높음

〈표 Ⅲ-6〉 보조금 지원 평균금액(2021년도 기준)

(단위 : 천원)

법인유형	보조금총지원금	시·군지원금	도지원금	국비지원금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N=66)	203,306	90,465	21,356	91,105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N=13)	115,822	41,950	64,653	9,218
사단법인 (N=34)	52,599	26,235	17,941	1,883
재단법인 (N=5)	409,059	403,940	5,118	0
총계	158,962	79,896	24,454	52,515

□ 부동산

- 기본재산 현황 중 부동산의 평가액은 사단법인에서 ‘3억원 미만’으로 응답한 곳이 3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라고 한 곳은 사회복지시설법인이 가장 많았음
- 법인의 유형을 막론하고 부동산 자산이 3억원 미만인 법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Ⅲ-7〉 부동산 평가액

(단위 : 개소)

법인유형	부동산 자산					전체
	3억원미만	3억이상 10억원미만	10억이상 50억원미만	50억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11	11	25	10	9	66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8	2	1	0	2	13
사단법인	35	0	1	0	0	36
재단법인	3	0	0	3	0	5
합계	57	13	27	12	11	120

□ 현금성 기본재산

- 기본재산 현황 중 현금성 기본재산 평가액은 ‘3억 미만’ 이 82.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억이상 10억미만’ 9.2%, ‘10억이상 50억미만’ 6.7%, ‘100억 이상’이 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8〉 현금성 기본재산 평가액

(단위 : 개소,%)

평가액	빈도	비율
3억 미만	99	82.5
3억이상 10억미만	11	9.2
10억이상 50억미만	8	6.7
50억이상 100억미만	0	0.0
100억 이상	2	1.7
총계	120	100.0

□ 종사자 현황

- 대부분의 법인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종사자가 있으나 인원은 많지 않음
 - 상근종사자가 ‘있음’은 73.6%, ‘없음’은 26.4%로 조사됨. 상근종사자 인원 수에 응답한 81개소의 평균 수는 2.9명으로 조사됨. 보조금 상근인력이 ‘있음’은 15.8%, ‘없음’은 84.2%로 조사됨. 보조금 상근인력 수에 응답한 19개소의 평균 인원수는 5.6명임

〈표 Ⅲ-9〉 상근·비상근 여부

(단위 : 개소,%)

종사자	있음	평균	없음
상근종사자(N=110)	81(73.6%)	2.9	29(26.4%)
보조금 상근인력(N=120)	19(15.8%)	5.6	101(84.2%)
비상근종사자(N=114)	40(35.1%)	1.5	74(52.9%)
보조금 비상근인력(N=120)	3(2.5%)	7.7	117(97.5%)

- 상근종사자가 없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서 22개소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사단법인’이 7개소로 나타났으나 ‘사회복지 지원법인’과 ‘재단법인’은

상근종사자가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상근종사자가 있는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에서 22개소로 가장 많음
 - 그 다음으로 '사단법인' 19개소, '사회복지 지원법인' 5개소로 나타났으며, 재단법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10〉 법인유형별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법인유형	상근 근로자 수							전체	비상근종사 여부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무응답		있음	없음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22	25	7	3	3	2	4	66	22	44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0	2	4	3	1	1	1	13	5	8
사단법인	7	12	5	3	1	4	4	36	19	17
재단법인	0	2	0	0	0	2	1	5	0	5
합계	29	39	16	9	5	7	9	115		

- 법인설립자가 '있음'은 29.2%, '없음'은 70.8%로 나타남. 법인설립자의 평균 인원은 1.3명으로 분석됨
 - 이사장이 '있음'은 70.8%, '없음'은 29.2%로 나타남. 이사장의 평균인원은 1.1명으로 분석됨
 - 시설장이 '있음'은 20.0%, '없음'은 80.0%로 나타남. 시설장의 평균인원은 1.6명으로 분석됨
 - 사무국장이 '있음'은 50.8%, '없음'은 49.2%로 나타남. 법인설립자의 평균 인원은 1.0명으로 분석됨
 - 사회복지사가 '있음'은 42.5%, '없음'은 57.5%로 나타남. 사회복지사의 평균 인원은 3.2명으로 분석됨
 - 간사가 '있음'은 25.0%, '없음'은 75.0%로 나타남. 간사의 평균 인원은 1.3명으로 분석됨
- 법인과 시설의 종사자가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음
 - 법인대표의 겸직여부에서 '겸직하고 있음'은 18.5%, '겸직하지 않음'은 81.5%로 분석됨
 - 사무국장 등 직원의 겸직여부에서 '겸직하고 있음'은 14.3%, '겸직하지 않음'은 85.7%로 분석됨

〈표 Ⅲ-11〉 법인대표 및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단위 : 개소,명,%)

유형	종사자	있음	없음	겸직여부	
				O	X
법인대표	법인설립자(N=120)	35(29.2%)	85(70.8%)	22(18.5%)	97(81.5%)
	이사장(N=119)	85(70.8%)	35(29.2%)		
	시설장(N=120)	24(20.0%)	96(80.0%)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사무국장(N=119)	60(50.8%)	59(49.2%)	17(14.3%)	102 (85.7%)
	사회복지사(N=119)	49(42.5%)	69(57.5%)		
	간사(N=120)	30(25.0%)	90(75.0%)		

□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¹⁶⁾

- 법인이 직영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음’이 54.2%, ‘없음’이 45.8%로 나타남. 직영시설 수의 평균은 3.5개소로 조사됨
- 법인이 위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음’이 31.4%, ‘없음’이 68.6%로 나타남. 위탁시설 수의 평균은 4개소로 조사됨

〈표 Ⅲ-12〉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여부 (N=120)

(단위 : 개소,명,%)

법인 운영시설	있음	평균	없음
법인직영	64(54.2%)	3.5	54(45.8%)
지자체위탁	37(31.4%)	4	81(68.6%)

- 사회복지복지 법인 중 시설법인은 1개소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6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13개 법인이 있었음

16) 법인이 운영주체로서 위탁받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수를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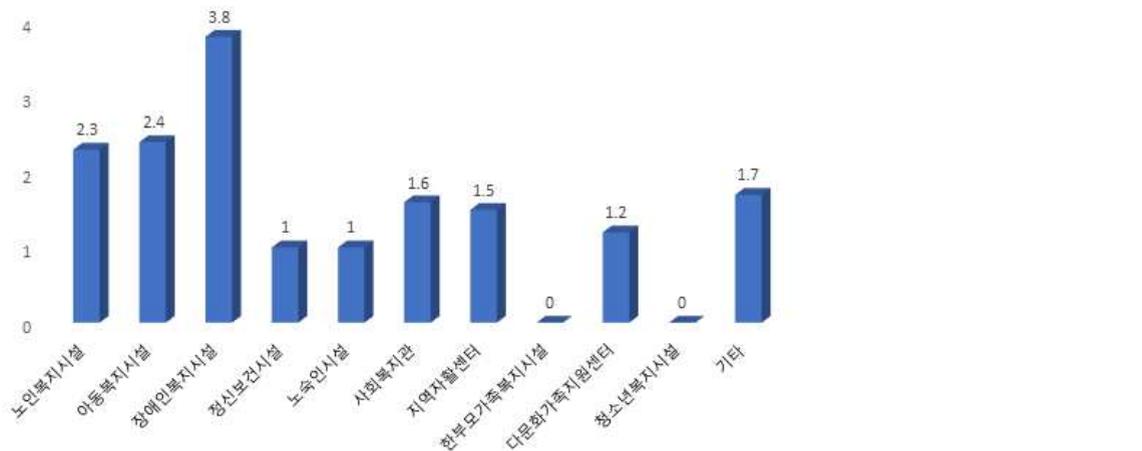
〈표 Ⅲ-13〉 법인유형별 시설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법인유형		운영시설 수							전체
		없음	1개소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이상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직영	8	16	14	7	3	5	13	66
	위탁	45	9	2	1	1	0	0	58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직영	11	1	1	0	0	0	0	13
	위탁	10	1	1	0	0	1	0	13
사단법인	직영	33	3	0	0	0	0	0	36
	위탁	25	4	1	2	0	2	2	36
재단법인	직영	4	1	0	0	0	0	0	5
	위탁	3	0	1	0	0	0	1	5
합계		139	35	20	10	4	8	16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 안내기준에 따라 분석한 법인에서 운영 중인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복지시설’이 3.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 2.4개소, ‘노인복지시설’ 2.3개소, ‘기타’ 1.7개소, ‘사회복지관’ 1.6개소, ‘지역자활센터’ 1.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정신보건시설’과 ‘노숙인시설’ 1개소로 분석됨

〈그림 Ⅲ-1〉 운영 중인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평균(개소)



2) 법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마련 여부

-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한 운영규정 마련여부에 대해서 '예'로 응답한 비율이 79.2%,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이 20.0%, '무응답'이 0.8%로 조사됨

〈표 Ⅲ-14〉 명문화한 운영규정 마련여부

(단위 : 개소,%)

항목	빈도	비율
예	95	79.2
아니오	24	20.0
무응답	1	0.8
총계	120	100.0

□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로는 '운영 중인 복지시설 운영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활용함' 이 28.6%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운영규정에 관한 정보획득이 어려움' 25.0%, '필요성이 높지 않음' 17.9%, '설립허가 및 변경 시 적용되고 있음'과 '기타'가 14.3%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정관으로 법인 운영 중에 있음, 운영 중인 시설이 없음, 운영 규정 준비 중에 있음, 참고할 만한 자료 불충분, 인력 및 시간 부족, 절차 불편 등으로 응답함

〈표 Ⅲ-15〉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개,%)

이유	빈도	비율
필요성이 높지 않음	5	17.9
설립허가 및 변경 시 적용되고 있음	4	14.3
운영규정에 관한 정보획득이 어려움	7	25.0
운영 중인 복지시설 운영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활용함	8	28.6
기타	4	14.3
총계	28	100.0
기타내용 1. 정관으로 법인 운영 중임 2. 운영 중인 시설이 없음 3. 운영규정 준비 중에 있음 4. 참고할 만한 자료 불충분, 인력 및 시간부족, 절차불편 등		

□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 및 매뉴얼 필요성

- 법인 대상 운영규정 마련과 유지를 위한 교육/컨설팅 및 매뉴얼 배포 등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 ‘예’로 응답한 비율이 39.2%,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이 3.3%, ‘무응답’이 57.5%로 조사됨

〈표 III-16〉 교육, 컨설팅 및 매뉴얼 배포 등 지원 필요여부

(단위 : 개소,%)

항목	빈도	비율
예	47	39.2
아니오	4	3.3
무응답	69	57.5
총계	120	100.0

□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

- 법인 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법인 종사자 대상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이 32.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운영규정 마련 및 법인 운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25.8%,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19.4%, ‘기타’ 12.9%, ‘법인 종사자 대상 교육’ 9.7%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법률 및 공동대응 지원, 인력채용 및 인건비 지원, 운영비 지원, 공무원마다 통일된 법해석 필요 등으로 응답됨

〈표 III-17〉 법인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법인 종사자 대상 교육	6	9.7
운영규정 마련 및 법인 운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16	25.8
법인 종사자 대상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0	32.3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공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12	19.4
기타	8	12.9
총계	62	100.0
기타내용 1. 법률 및 공동대응 지원 2. 인력채용 및 인건비 지원 3. 운영비 지원 4. 공무원마다 통일된 법해석 필요		

□ 재산관리 어려운 점

- 법인의 재산관리에 어려운 점으로는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이해부족’ 이 35.7%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재산관리에 관한 정보획득이 어려움’ 28.0%, ‘설립허가 이후 재산관리에 대한 안내 부족’ 19.6%, ‘기타’ 16.8%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검직에 따른 전담업무수행 불가능, 계속 변경되는 과세정책, 국세청, 등기소, 세무서, 도청 간의 지침 및 관점이 다름,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음
- 담당자의 자기 판단에 따른 재산 처분의 인허가 등, 규제에 의한 법인자산투자 및 활용불가능, 기본과 보통재산 및 수익사업에 대한 맞춤형 활용방법 정보제공, 노후부동산 유지 관리비 부족, 큰 어려움 없음 등으로 응답함

〈표 Ⅲ-18〉 법인의 재산관리에 어려운 점

(단위 : 개, %)

내 용	빈도	비율
설립허가 이후 재산관리에 대한 안내 부족	28	19.6
관련 법률의 변경 및 이해부족	51	35.7
재산관리에 관한 정보획득이 어려움	40	28.0
기타	24	16.8
총계	143	100.0
기타내용 1. 검직에 따른 전담업무수행 불가능 2. 계속 변경되는 과세정책 3. 국세청, 등기소, 세무서, 도청 간의 지침 및 관점이 다름 4.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담당자의 자기 판단에 따른 재산 처분의 인허가 등 5. 규제에 의한 법인자산투자 및 활용불가능 6. 기본과 보통재산 및 수익사업에 대한 맞춤형 활용방법 정보제공 7. 노후부동산 유지 관리비 부족 8. 큰 어려움 없음		

□ 재산관리 관련 지원 필요성

- 법인 재산관리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법인 종사자 대상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이 35.1%로 수요가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20.3%,

- ‘재산관리에 관한 컨설팅’ 18.9%,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17.6%, ‘기타’ 8.1%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인건비, 법인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기본재산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많음, 실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공, 노후 건축물 지원 컨설팅, 큰 어려움 없음 등으로 응답함

〈표 III-19〉 법인 재산관리에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개, %)

내 용	빈도	비율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26	17.6
재산관리에 관한 컨설팅	28	18.9
법인 종사자 대상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52	35.1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30	20.3
기타	12	8.1
총계	148	100.0
기타의 내용 1.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매뉴얼 제공 2. 인건비, 법인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 3.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기본재산이 타 지자체에 비하여 많음 4. 실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제공 5. 노후 건축물 지원 컨설팅 6. 큰 어려움 없음		

□ 인력운영 어려운 점

- 법인의 인력운영에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법인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채용할 여력이 없음’이 63.2%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법인 인력채용 및 운용에 관한 법적기준과 규정이 없음’ 14.3%, ‘기타’ 13.5%, ‘운영 중인 복지시설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적절함’ 8.3%, ‘법인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치 않음’ 0.8%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법인근무경력 100% 미인정 및 장기근속휴가 등의 복지사항 배제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 여러 가지 업무 병행으로 인한 인력 부족,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련 지침 부재,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 산하시설 직원이 법인에서 겸직수당을 받으며 업무지원 할 수 있는 자율성 필요, 사무국과 산하시설 간의 동일 급여 체계 구축 및 적용 필요 등으로 응답함

〈표 Ⅲ-20〉 법인 인력운영에서의 어려움

(단위 : 개, %)

내 용	빈도	비율
법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채용할 여력이 없음	84	63.2
법인 인력채용 및 운용에 관한 법적기준과 규정이 없음	19	14.3
법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치 않음	1	0.8
운영 중인 복지시설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적절함	11	8.3
기타	18	13.5
총계	133	100.0
기타내용 1. 법인근무경력 100% 미만정 및 장기근속휴가 등의 복지사항 배제로 인한 채용의 어려움 2. 여러 가지 업무 병행으로 인한 인력 부족 3.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관련지침 부재 4. 인건비 지급의 어려움 5. 산하시설 직원이 법인에서 겸직수당을 받으며 업무지원 할 수 있는 자율성 필요 6. 사무국과 산하시설 간의 동일 급여 체계 구축 및 적용 필요		

□ 인력운영 관련 지원 필요성

- 법인 인력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필요여부에 대해서 ‘예’로 응답한 비율이 85.0%,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이 12.5%, ‘무응답’ 이 2.5%로 조사됨

〈표 Ⅲ-21〉 법인 인력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

(단위 : 개소, %)

항목	빈도	비율
예	102	85
아니오	15	12.5
무응답	3	2.5
총계	120	100.0

□ 법인 인력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 법인 인력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법인업무 전담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또는 인건비 지원’이 67.2%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법인 인력운영에 관한 지침 및 안내 제공’ 12.7%, ‘법인과 시설 업무를 병

- 행하는 종사자 대상 복지증진' 11.9%, '기타' 5.2%, '인력채용 및 운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3.0%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법인근무경력 100% 인정,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 시설 사회복지사와 같은 대우 필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등으로 응답함

〈표 Ⅲ-22〉 법인 인력운영에 가장 필요한 지원

(단위 : 개, %)

내 용	빈도	비율
법인업무 전담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또는 인건비 지원	90	67.2
인력채용 및 운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4	3.0
법인 인력운영에 관한 지침 및 안내 제공	17	12.7
법인과 시설 업무를 병행하는 종사자 대상 복지증진	16	11.9
기타	7	5.2
총계	134	100.0
기타내용 1. 법인근무경력 100% 인정 2. 인건비 등의 예산지원 3. 시설 사회복지사와 같은 대우 필요 4.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3) 법인 등 지원영역

□ 경기도의 법인지원 필요여부

- 법인 등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에 대해서 '예'로 응답한 비율이 89.2%,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이 9.2%, '무응답' 이 1.7%로 조사됨

〈표 Ⅲ-23〉 법인 등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

(단위 : 개소, %)

문항	빈도	비율
예	107	89.2
아니오	11	9.2
무응답	2	1.7
총계	120	100.0

□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는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이 26.9%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역량강화)’ 24.7%, ‘법인 등의 컨설팅 업무’ 15.9%,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12.6%, ‘기타’ 9.9%,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6.6%,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2.2%,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1.1%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전문가 인력풀 제공사업(재무·회계, 세무·회계감사인력, 노무사, 변호사 등), 비영리법인 법적책임 등에 관한 종사자 교육, 전문 교육 및 매뉴얼 제공(분야별 상담사 파견 등), 운영비·인건비·목적사업비 등 예산지원 등으로 응답하였음

〈표 Ⅲ-24〉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단위 : 개, %)

내 용	빈도	비율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역량강화)	45	24.7
법인 등의 컨설팅 업무	29	15.9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2	1.1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23	12.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12	6.6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49	26.9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4	2.2
기타	18	9.9
총계	182	100.0
기타내용 1. 전문가 인력풀 제공사업(재무·회계, 세무·회계감사인력, 노무사, 변호사 등) 2. 비영리법인 법적책임 등에 관한 종사자 교육 3. 전문 교육 및 매뉴얼 제공(분야별 상담사 파견 등) 4. 운영비, 인건비, 목적사업비 등 예산지원		

□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지원 영역

- 법인 등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의 내용 중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가 57.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외 연수’ 23.0%, ‘법정의무 교육 참여’ 8.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7.4%, ‘기타’가 3.7%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보수교육, 사회복지협의회 인정),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사회복지시설견학과 파견근무 등 제공, 재산관리, 산하기관 운영관리 등의 행정운영교육 제공 등으로 응답됨

〈표 Ⅲ-25〉 법인 등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의 내용 중 지원 필요영역

(단위 : 개, %)

내 용	빈도	비율
법정의무 교육 참여	11	8.1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78	57.8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외 연수	31	23.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0	7.4
기타	5	3.7
총계	135	100.0
기타내용 1. 법정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보수교육, 사회복지협의회 인정) 2.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사회복지시설견학과 파견근무 등 제공 3. 재산관리, 산하기관 운영관리 등의 행정운영교육 제공		

□ 컨설팅 영역

- 법인 등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으로 ‘법인 세무·회계’가 38.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법인의 수익사업 개발 등’ 31.8%, ‘후원금·품 관리’ 15.3%,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4%, ‘기타’ 1.8%로 나타남
- 기타내용으로는 재산관리 및 행정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표 III-26〉 컨설팅 지원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법인 세무·회계	66	38.8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12.4
후원금·품 관리	26	15.3
법인의 수익사업 개발 등	54	31.8
기타	3	1.8
총계	170	100.0
기타내용 1. 법인 재산관리 및 행정 등의 컨설팅 필요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영역

-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물품 공급’이 41.5%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방역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36.2%, ‘자체방역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11.5%, ‘방역 전문기관의 방문’ 6.9%, ‘기타’가 3.8% 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감염병 위험 대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침방안 마련, 방역업체의 정기적인 방역지원, 시설과 동일한 감염병에 따른 복무관리 및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응답함

〈표 III-27〉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물품 공급	54	41.5
방역 전문기관의 방문	9	6.9
방역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47	36.2
자체방역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15	11.5
기타	5	3.8
총계	130	100.0
기타내용 1. 감염병 위험 대비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지침방안 마련 2. 방역업체의 정기적인 방역지원 3. 시설과 동일한 감염병에 따른 복무관리 및 방역물품 지원		

□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 지원영역**

-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법인 등의 홍보 및 연구를 위한 소요비용 제공’이 36.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법인 등의 홍보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연계’와 ‘법인 등의 종사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이 30.1%, ‘기타’가 2.9%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정책제안서와 같은 자료집 출간 등을 위한 홍보·연구비 지원, 법인의 정체성(고유성과 주체성)에 맞게 구분하여 각각의 연구비용 지원 등으로 응답함

〈표 III-28〉 홍보 및 연구 지원필요영역

(단위: 개,%)

내 용	빈도	비율
법인 등의 홍보 및 연구를 위한 소요비용 제공	50	36.8
법인 등의 홍보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연계	41	30.1
법인 등의 종사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41	30.1
기타	4	2.9
총계	136	100.0
기타내용 1. 정책제안서와 같은 자료집 출간 등을 위한 홍보·연구비 지원 2. 법인의 정체성(고유성과 주체성)에 맞게 구분하여 각각의 연구비용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 법인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타 법인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웹) 설치와 운영’이 41.8%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타 법인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 마련’ 20.1%,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제공’ 17.9%,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협회 등) 구성’ 16.4%, ‘기타’가 3.7%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양질의 자료 및 정보를 법인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부터 제공, 중앙 단위의 연계협력 강화필요 등으로 응답함

〈표 Ⅲ-29〉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협회 등) 구성	22	16.4
타 법인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 마련	27	20.1
타 법인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웹) 설치와 운영	56	41.8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제공	24	17.9
기타	5	3.7
총계	134	100.0
기타내용 1. 양질의 자료 및 정보를 법인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부터 제공 2. 중앙단위의 연계협력 강화필요		

□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 필요영역

-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영역으로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복지제도와 임금체계 도입’이 4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 25.9%, ‘법인 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15.8%,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포상제도’ 7.6%, ‘기타’가 5.1%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법인근무경력 100% 인정,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승급 기준 도입으로 응답함

〈표 Ⅲ-30〉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복지제도와 임금체계 도입	72	45.6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	41	25.9
법인 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25	15.8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포상제도	12	7.6
기타	8	5.1
총계	158	100.0
기타내용 1. 법인근무경력 100% 인정 2.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승급 기준 도입		

□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필요영역

-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이 49.2%로 요구가 가장 높았음. 그 다음으로 ‘법인 등의 근로자가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연계’ 25.8%, ‘법인 등의 근로자가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검사지(진단) 비용 제공’ 15.0%,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파견’ 5.8%, ‘기타’가 4.2%로 나타남

〈표 Ⅲ-31〉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법인 등의 근로자가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연계	31	25.8
법인 등의 근로자가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검사지(진단) 비용 제공	18	15.0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파견	7	5.8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	59	49.2
기타	5	4.2
총계	120	100.0

4) 법인 등 지원에 관한 요구와 의견

- 실태조사 중 직접 질문 방식을 채택하여 주관적인 응답을 하도록 질문하고 그 내용을 질문별로 정리하였음
 - 질문의 내용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사업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 법인에서 응답한 내용을 직접 제시하고 그 중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영역을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구분하여 요약함

□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에 관한 의견 및 요구사항은 주로 정기적인 교육, 공무원과 담당자들의 공동교육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

- 교육의 유형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1년 중, 10회 이상)을 통한 종사자의 역량 강화하는 기회 제공에 대한 요구가 응답 중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법인 담당 공무원과 법인 종사자간의 이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통교육을 제안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교육 제안
- 교육의 분야는 비영리법인 재무, 회계, 노무 영역의 세부적인 교육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재산관리, 후원자관리, 후원물품관리와 산하기관 운영에 관한 제안이 있음
 - 지자체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 요구

○ 법인유형별로 종사자 교육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음

- 사회복지법인에서는 특히 비영리법인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시켜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 제시함

법인유형	교육에 관한 의견 및 요구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 법인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사회복지법인(지원)	법인 종사자 전문성 강화, 정기적인 집합교육
사단법인	연 10회 이상 정기교육 및 교육 의무화
재단법인	비대면 온라인 교육

○ 법인들이 직접 제안한 교육내용이나 훈련 방식은 매우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 회계, 노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요구가 많음

- 법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률과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거나 정기적인 교육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 법인 운영 목적별, 유형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는 교육사업 설계에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III-32〉 종사자 교육훈련 방식 요구 및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법인 등의 지원 중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p>소집 교육 외, 실시간 원격 연수 혹은 온라인 교육 등 교육훈련 방식 다양화</p> <p>정기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법인운영의 활성화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 사회복지시설 견학 등 국내외 연수 법인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맞춤형교육 진행(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비영리단체 등/소규모법인 구분 등) / 세무, 회계, 노무 등에 대한 영역별 세부적인 교육 진행</p>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법인 등의 지원 중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경기복지재단 비영리법인 및 담당공무원 교육, 특히 법인 정관변경, 재산관리 등 법률적 지원 필요 지자체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외부 교육 /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 실무 동영상 교육
원하는 교육 신청하면 지원금(교육훈련비) 주기 /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각 분야별 특화해서 사회복지법인에 맞는 교육(재산관리, 후원자관리, 후원물품관리, 산하기관운영 등)
종사자 역량강화교육(1회성이 아닌 회차별로 10회이상의 전문가 교육) / 인근대학과 연계한 전문적인 교육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법인 담당자 동반, 필수참석 안내 필요 / 교육훈련방식 세분화: 법인 운영목적별, 유형별 시기에 따른 맞춤형 교육 예) 1월 연말정산, 3월 공익법인 의무이행(국세청 공시 등) 관련 교육
매년 바뀌는 법률(사회복지사업법, 회계, 세무, 노무 등)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유관 법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워크숍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법인 운영 관련법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포괄적인 매뉴얼을 제작 배포 필요
법인 직원과 산하시설 직원이 일원화되면 한 가지 교육으로도 가능
보수교육 관련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므로 법인 인력도 교육복지혜택에 포함해야 함
유사 목적사업의 법인을 구분하여 교육
지역을 위한 봉사자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봉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독은 철저한데 지원은 전무해 문을 닫아야 하나 회의감 느낌

□ 컨설팅 필요영역과 방식

-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의 영역과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는 회계관리 컨설팅 요구가 가장 많았고 방식은 컨설턴트를 연계하는 방식을 선호함
 - 법인의 성격에 따라 의견이 다르며,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관리, 후원금 모금이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요구가 많은 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서는 후원금 모금에 관한 의견이 많았음

법인유형	컨설팅 관련 요구 및 의견
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관리 분야, 후원금 모금, 컨설턴트 연계
사회복지법인(지원)	수익사업, 보조금사업 마련과 운영, 지침
사단법인	후원금 모금 및 홍보 컨설팅
재단법인	후원금 모금

-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관리, 재산관리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임
 - 답변의 내용에서 보듯이 2순위는 법인에 대한 홍보 및 후원금 모금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법인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표 Ⅲ-33〉 컨설팅 필요영역 및 방식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법인 등이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떤 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십니까?
세무, 회계, 노무부문 컨설팅
후원금 관리(관항목 설정 등)를 포함한 전반적인 회계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각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규정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등이 구성되면 좋을 것 같음
모금의 컨설팅과 연계해주시고 사용처는 실적 보고를 통해 보고
특정분야보다 후원금모금 및 관리, 홍보, 재무, 회계, 노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법인운영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연계를 통해 법인의 현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관리, 재산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법인 자산을 활용한 사업지원(수익사업 활성화), 후원금 모금 및 관리
회계관리 (주관적인 해석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닌 명확한 처리방법) 세무상담 (전담 전문가와의 원활한 소통과 개정세법의 맞춘 처리와 설명)
회계관리, 홍보분야, 후원금 모금 및 관리에 대해 컨설턴트 연계
컨설팅 전담직원 채용,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 안내 등의 지원 법인(권역별/목적별/유형별)별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해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 경기도청(법인회의록 게시판처럼) 또는 경기복지재단 사이트 내 법인 실무자 전용 게시판 또는 Q&A운영 (전문가답변지원) 등
회계관리, 홍보분야, 후원금모금 및 관리에 대해 컨설턴트를 연계 동일법인 간 소규모복지시설 멘토맨 멘토활동 시설 안전 및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컨설턴트를 연계
수익사업 모델, 회계.세무 지침
홍보분야에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기획단계부터 하는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음 (요즘 홍보를 많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나 어떻게 홍보해야 효과적인 홍보가 되는지 등)
회계관리 및 비영리 법인의 운영등에 관하여 매뉴얼 등

□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 법인 활성화와 연구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플랫폼 구축,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 홍보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비용을 지원할 것을 제안함
 - 공통적으로 법인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경기도 차원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원함

법인유형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회복지법인(시설)	플랫폼, 협회 구성, 전문가 연계 및 비용 지원
사회복지법인(지원)	자원공유 및 연계를 통한 전문적 홍보 자문 확대
사단법인	홈페이지, 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재단법인	경기도 차원의 법인홍보 사이트 개설

- 법인이 수시로 자문받을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해 두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법인에 예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면 연 단위 컨설팅 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신청에 따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임

〈표 III-34〉 법인 홍보 및 연구 관련 요구 및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자료제작 비용지원
자원봉사 활동부분 /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연구
전문가연계를 통한 컨설팅 및 수시자문지원(전문가인력풀),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향상 및 정보교류를 위한 커뮤니티활성화
홈페이지 운영비지원 / 국가사회정보시스템 사용 요망
홍보비 지원(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및 후원기금마련을 위한 사업비 일부 한정적 지원 국내 사업 또는 해외 복지사업에 대한 매뉴얼 또는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지역사회 사회복지법인 소개 및 법인 종사자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비영리법인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연구 활동 진행
각 지역의 우수 법인 선정하여 해당 법인을 홍보
경기도 차원에서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체 홍보 사이트 개설
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현안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비용지원 (세미나 개최비용, 연구비용 등)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청 홈페이지에 법인에 대한 홍보자료, 유관기관연계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이 요구
법인에서 수시로 자문받을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 구성과 법인과의 매칭
소요비용 제공
영세 법인이 무료로 이용, 또는 무료로 자체 제작 가능한 플랫폼의 제공
예산 지원 및 전문가 연계
온라인 홍보 등에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지원 (관련과 전공 학생 또는 재능기부자 연계)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선발하여 경영 사례발표, 홍보 및 후원금 모금관련 교육 등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형별 법인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게 도출되었음
 - 오프라인으로는 정례적인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갖도록 지원하고 온라인에서는 각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있음

법인유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사회복지법인(시설)	정례적 간담회(모임), 워크숍 개최 비용 지원
사회복지법인(지원)	공용 플랫폼 구축
사단법인	플랫폼,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등 교류의 장 마련
재단법인	관련협의체 구성

-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있는 온라인 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경기도 경기복지플랫폼(<https://ggwf.or.kr>)과 같은 현재 이미 사용되고 있는 포털에 섹션을 추가하거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센터(<https://welinfo.kr>)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함

〈표 III-35〉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원 요구 및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은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협의체 구성 및 정기 모임 지원
타 법인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웹) 설치와 운영
법인 종사자 워크숍 등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법인 간 종사자들의 동아리 활동, 연수 또는 교육 연구 활동
각 기관의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
공동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복지법인 간 정보교류 필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 및 세미나 등을 열 수 있도록 기회 제공
동일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와 정보 공유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법인의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법인이 사회복지기관 또는 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등 전문지식을 기부할 수 있는 네트워크 연계
비영리법인이어도 운영특성에 따라 세분화해서 협력, 네트워크 생겨야 실질적인 것 같음 예) 사회복지법인 인데 교육기관 운영하는 법인 간 네트워크 절실
사업목적이 유사한 기관들과의 정보공유 등을 위한 사이트(플랫폼) 제작 지원
유관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설치 운영과 오프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도록 법인 교육 혹은 기획 마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관련 사업 연계를 하면 업무를 서로 참고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정례적 모임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운영관련 어려운 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 창구개설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가능한 웹설치운영지원 등
주기적인 간담회 진행
주무관청 및 협회 주도의 협력체계 구축
플랫폼설치와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
함께하는 트레킹(일반인, 시설이용자) /장신구 및 물품만들기/ 난타
연합모금을 사업을 통한 후원금 모금사업진행

□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가장 많은 요구가 임금수준을 개선하거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지원임

- 예산지원을 제외하고는 복리후생 차원의 힐링프로그램 도입, 심리상담 등 근로자를 위한 지지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음

법인유형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심리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휴가 지원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힐링 프로그램, 장기근속 휴가 등
사단법인	상담사 지원, 힐링캠프 참여
재단법인	법인 근로자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에 법인 근로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포상의 의미와 법인이 개별적으로 계획하기 어려운 사업을 경기도 차원에서 설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임

〈표 Ⅲ-36〉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 관련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에 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법인 근로자 무상교육 확대. 무료견학 프로그램
법인 근로자들이 모여 참여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임금 보전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
법인 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종사자 수당 및 특수직 근무수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정체성(공공성, 공익성, 자주성) 확보
법인 유사경력 80%에 대한 100% 경력 인정 강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대상 제외에 대한 복지증진 기회 부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 및 복지제도와 임금체계 도입
다른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협회가 존재하여 협회차원의 다양한 교육과 실무자 연수 그리고 재충전을 위한 여행 등등 여러 지원활동이 존재하며 법인의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지원을 바람
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상설화
법인 근로자 대상 지지기반(자조그룹 운영 지원 등) 마련
법인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지원
법인 근로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인건비 지원 및 심리상담 요청 시 상시 지원
법인 근무경력이 오래된 경우 타 기관이나 시설로의 이직이 어려움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에 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경력인정이 80%이기 때문에 근무경력이 오래될수록 삭감되는 경력일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음 사회복지법인 근무 종사자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100%경력인정 반영이 될 수 있길 바램
법인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함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복지제도와 임금체계 도입/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실시
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 및 지자체 복리후생정책(장기근속휴가등)에 있어 동일한 혜택이 있어야 법인 직원의 장기근속이 보장되며, 법인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 및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전담상담원 지원

□ 그 밖에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종사자 처우개선, 인력지원 등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 제시
 - 희망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의견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과 같은 임금체계,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였음
 - 경기도가 도내 사회복지 사업 법인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때 예산을 어디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요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산의 범위와 지원의 취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신중한 결정이 있어야 함

법인유형	기타 사업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컨설팅 및 교육비 지원사업, 종사자 참여 프로그램, 연찬회 지원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공모사업, 공동캠페인 전개
사단법인	법인 지속발전을 위한 운영관리 지도 및 지원
재단법인	교통비 또는 사무용품비 지원

- 예산의 직접지원, 사회복지사 경력 100% 인정 등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법인이 참여할 수 있고, 당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개발 및 적용이 시급함

〈표 Ⅲ-37〉 경기도 법인 지원 희망 사업

질문 및 답변내용
<p>질문)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p> <p>법인의 자체 사무비, 운영비, 인건비 지원, 사회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규모가 커지고, 산하기관에 대한 전출금 등에 도움이 되므로 복지사업이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것임</p>
<p>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3조(적용대상)의 대상임에도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서 소외되어 있음 / 조례의 제3조(적용대상)을 적용해 주기바람</p>
<p>법인 홍보 및 후원금 모금 등을 위한 컨설팅비 지원 영역별 전문가 연계를 통한 전문 지식 지원(인력풀을 통한 상담 및 지원)</p>
<p>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분리하고 법인전담자부담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법인 1인 종사자에 한해서 특수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 법인과 시설의 회계를 분리하고 법인전담자부담인력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채용시 3년간 기본급의 30%를 지원하는 사업</p>
<p>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 법인 종사자 포함 법인종사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 제시 법인의 목적사업 내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공모 사회서비스 분야 공익캠페인, 행사 등 전개</p>
<p>자원봉사활동 분야,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p>
<p>광역망조성사업-시지자체 연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사업 시설들을 연계,지원,네트워크 형식사업이면 좋겠음</p>
<p>법인업무 전담인력 배치 및 인건비 지원</p>
<p>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모델링 제시</p>
<p>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p>
<p>세제혜택, 지나친 규제완화 및 시설보강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다한 재산세로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없고 노후 된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은 법인의 사유재산이라 지원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추가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승인해주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p>

□ 경기도의 지원사업 수준에 대한 기대

- 비용으로는 연간 최소 5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법인에서는 기능보강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재단 법인은 연간 5백만원 정도의 지원이 법인에 제공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법인유형	지원사업의 규모 및 수준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기능보강비 등 5,000만원 ~ 1억원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도비 50% + 법인 50%
사단법인	1,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재단법인	연간 5백만원 이내

- 예산을 동반한 지원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서비스 품질관리에 해당하는 제도로써 법인평가 또는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과정도 인정해야 함
- 경기도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법인 등 당사자들과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Ⅲ-38〉 경기도 법인 등 지원 희망 수준

질문 및 답변내용
<p>질문)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십니까?</p> <p>전담인력 배치가 가능한 사업 -인건비 100%가 포함된 사업(호봉 및 직급 상승이 가능한 예산 /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기준의 인건비 가이드 준용) 전문교육- 해당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지원</p> <p>법인 당 연 5천만원 이상</p> <p>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근로자 인건비는 지원이 필수적임</p> <p>연간 5백만원 이내</p> <p>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지원</p> <p>회계 보고서를 감사하는데 필요한 공인회계사 파견 지원 / 법인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활동 지원</p>

3.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1) 단체의 일반현황

□ 비영리단체 유형

-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고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총 1327개 가량이며 복지국 소관은 약 374개소로 축약됨
- 유형은 장애인과, 노인복지과, 복지정책과 소속, 사회복지과 등 소속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수행하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분류되기도 함
-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가족연합, 장애인 가족협회, 부모회 등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조적 성격의 모임도 있음
- 노인 분야는 후원회, 노인봉사회, 경로식당, 노인회, 실버포럼, 시니어클럽 등의 이름으로 봉사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대부분임
- 복지정책과 소속에는 주로 대한적십자봉사회, 운동본부, 후원회, 교육센터 같은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형의 단체들이 포함됨
- 사회복지과 소속은 좋은이웃, 열린교실, 나눔터, 복지회, 봉사단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음
- 그 밖에 이웃봉사단, 급식소, 사랑회, 생활본부, 선교단, 공동체, 생명의 전화, 봉사회 등이 속함
- 법인격을 제외한 비영리단체를 따로 구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제공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에 근거함

□ 소속지역

- 설문에 응답한 단체들의 지역현황으로는 '수원시'가 14.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남시'와 '안산시' 10.4%, '부천시'와 '파주시' 8.3%, '고양시' 6.3%로 나타남

〈표 III-39〉 비영리민간단체 소속지역

(단위 : 개소,%)

지역	빈도	비율
수원시	7	14.6
고양시	3	6.3
성남시	5	10.4
부천시	4	8.3
화성시	1	2.1
안산시	5	10.4
안양시	1	2.1
평택시	1	2.1
시흥시	1	2.1
파주시	4	8.3
김포시	1	2.1
광주시	2	4.2
광명시	2	4.2
군포시	2	4.2
하남시	2	4.2
오산시	1	2.1
이천시	1	2.1
안성시	1	2.1
여주시	1	2.1
동두천시	1	2.1
가평군	1	2.1
연천군	1	2.1
계	48	100.0

□ 설립연도

- 설립연도는 '2011년~2022년'에 설립된 단체가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0년 이전' 27.1%, '2001년~2005년' 18.8%, '2006년~2010년' 16.7%의 순으로 조사됨
- 단체가 설립 등록된 시기가 10년이상 많게는 20년 이상 된 곳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표 Ⅲ-40〉 설립연도

(단위 : 개소,%)

설립연도	빈도	비율
2000년 이전	13	27.1
2001년 ~ 2005년	9	18.8
2006년 ~ 2010년	8	16.7
2011년 ~ 2022년	18	37.5
총계	48	100.0

□ 설립목적

- 설립목적으로는 '취약계층복지'가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애인복지' 31.3%, '아동·청소년 복지' 10.4%, '노인복지' 8.3%, '지역주민복지' 6.3%, '기타'가 4.2%로 나타남
- 노인복지사업에는 컴퓨터활용능력 교육,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무료급식제공 등으로 분석됨
- 장애인복지사업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료보급,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으로 분석됨
- 아동·청소년복지사업에는 아동청소년 사회공헌활동, 실종아동 상봉지원사업, 학자금 및 생필품 지원 등으로 분석됨
- 지역주민복지사업에는 지역주민 삶의 질 증진사업 등으로 분석됨
- 기타사업에는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살예방사업, 참전 국가유공 복지증진사업, 지역사회복지 조사·연구 사업 등으로 분석됨

〈표 III-41〉 설립목적

(단위 : 개소,%)

설립목적	빈도	비율
노인복지	4	8.3
장애인복지	15	31.3
아동·청소년복지	5	10.4
취약계층복지	17	35.4
지역주민복지	3	6.3
기타	2	4.2
무응답	2	4.2
총계	48	100.0

***설립목적 1순위를 기준으로 분류**

1. 노인복지: 컴퓨터활용능력 교육,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무료급식제공 등
2.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장애인 권익옹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료보급, 장애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3. 아동·청소년복지 : 아동청소년 사회공헌활동, 실종아동 상봉지원사업, 학자금 및 생필품 지원 등
4. 취약계층복지 : 무료급식, 식품지원, 정서심리안정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학자금지원 등
5. 지역주민복지 : 지역주민 삶의 질 증진사업 등
6. 기타 : 지역사회봉사활동, 자살예방사업, 참전 국가유공 복지증진사업, 지역사회복지 조사·연구 사업 등

□ 주요사업

- 주요사업으로는 ‘지원사업’이 2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담사업’ 18.8%, ‘기타’ 16.7%, ‘무료급식사업’ 12.5%, ‘교육사업’과 ‘캠페인(자원봉사)’ 8.3%, ‘환경개선사업’과 ‘시설운영’이 2.1%로 나타남
 - 상담사업으로는 동료상담, 위기전화상담 등으로 분석됨
 - 무료급식사업으로는 노인대상 무료급식 등으로 분석됨
 -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미화원 쉼터개선 등으로 분석됨
 - 교육사업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캠페인(자원봉사)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복지시설방문 봉사 등 분석됨
 - 시설운영사업으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으로 분석됨
 - 지원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재가복지가정 지원, 독거노인 야구르트 지원, 밑반찬(김치 등) 지원, 장애인 정보화 지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계층 학자금 및 생필품 지원,푸드뱅크 등, 독거노인 이불 교체지원, 독거노인 정서심리안정지원 등으로 분석됨
- 기타사업으로는 사회복지 조사·연구, 조직사업, 참정유공 장애인 재활복지사업, 노인의 권익신장 사업, 실종아동찾기,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예능제 등으로 분석됨

〈표 Ⅲ-42〉 주요사업

(단위 : 개소,%)

사업대상 분류	빈도	비율
상담사업	9	18.8
무료급식사업	6	12.5
환경개선사업	1	2.1
교육사업	4	8.3
캠페인(자원봉사)	4	8.3
시설운영	1	2.1
지원사업	13	27.1
기타	8	16.7
무응답	2	4.2
총계	48	100.0

***주요사업 1순위를 기준으로 분류**

1. 상담사업: 동료상담, 위기전화상담 등
2. 무료급식사업: 노인대상 무료급식 등
3. 환경개선사업: 미화원 쉼터개선 등
4. 교육사업: 노인 및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
5. 캠페인(자원봉사): 아동청소년 돌봄사업, 복지시설방문 봉사 등
6. 시설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7. 지원사업: 취약계층 재가복지가정 지원, 독거노인 야구르트 지원, 밑반찬(김치 등) 지원, 장애인 정보화 지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취약계층 학자금 및 생필품 지원,푸드뱅크 등, 독거노인 이불교체지원, 독거노인 정서심리안정지원 등
8. 기타: 사회복지 조사·연구, 조직사업, 참정유공 장애인 재활복지사업, 노인의 권익신장 사업, 실종아동찾기,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예능제 등

□ 조직인력현황

-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자는 과반수가 단체에 상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립자의 조직인력현황은 ‘대표(회장)’이 5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센터장’ 14.4%, ‘지회장’ 6.3%, ‘지부장’과 ‘관장’이 4.2%, ‘협의장’, ‘단장’, ‘원장’ 2.1%로 분석됨
 - 설립자의 상근여부를 응답한 45명 중 ‘상근’이 53.7%, ‘비상근’이 46.7%로 분석됨
 - 설립자의 주요 경력으로는 시설센터장, 제조업대표, 장애인협회 근무 및 봉사단체회장, 경기도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학교수, 초등학교원, 목사, 요식업대표, 해병전우회, 육군원사전역 등으로 분석됨

〈표 Ⅲ-43〉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자 현황

(단위 : 명,%)

설립자	빈도	비율	상근	비상근
대표(회장)	28	58.3	24명(53.7%)	21명(46.7%)
협의장	1	2.1		
센터장	7	14.4		
지회장	3	6.3		
지부장	2	4.2		
관장	2	4.2		
단장	1	2.1		
원장	1	2.1		
무응답	3	6.3		
총계	48	100		
주요경력				
1. 복지시설 관련자: 지역아동센터 회장, 공동생활시설장, 아동상담교육센터, IL센터장 등 2. 민간기업 운영자 : 제조업 대표 등 3. 민간단체 관련자 : 장애인협회 근무, 봉사단체회장 등 4. 공공기관(단체) 관련자 : 경기도의회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5. 교육기관 관련자 : 대학교수, 초등학교원 등 6. 기타 : 목사, 요식업 대표, 해병전우회, 육군원사전역 등				

- 중간관리자는 주로 사무국장의 명칭을 사용하며 60%이상이 단체에 상근함
 - 중간관리자의 조직인력현황은 ‘사무국장’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실장·과장·대리·총무 등을 포함한 직원’ 20.8%, ‘부회장’ 14.6%, ‘사회복지사 및 평생교육사’ 4.0%, ‘지회장’, ‘사무처장’, ‘사무총장’, ‘부센터장’, ‘부지부장’ 이 2.1%로 분석됨
 - 중간관리자의 상근여부를 응답한 38명 중 ‘상근’이 65.8%, ‘비상근’이 34.2%로 분석됨
 - 중간관리자의 주요 경력으로는 복지시설 근무, 화물업 대표, 중공업 근무, 장애인단체 및 봉사단체 활동, 시청근무, 대학교수 및 초등학교원 목사, 해병전우회, 문화센터관리, 육군원사전역 등으로 분석됨

〈표 Ⅲ-44〉 중간관리자 현황

(단위: 명,%)

직위분류	빈도	비율	상근	비상근
지회장	1	2.1	25명(65.8%)	13명(34.2%)
사무국장	15	31.3		
사무처장	1	2.1		
사무총장	1	2.1		
부센터장	1	2.1		
부지부장	1	2.1		
부회장	7	14.6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2	4.0		
직원 (실장, 과장, 대리, 총무 등)	10	20.8		
무응답	9	18.8		
총계	48	100		
주요경력				
1. 복지시설 관련자 : 지역아동센터 근무, IL센터, 장애인복지시설 근무 등 2. 민간기업 운영자 : 화물업 대표, 중공업 근무 등 3. 민간단체 관련자 : 장애인단체활동, 봉사단체활동 등 4. 공공기관(단체) 관련자 : 시청근무 등 5. 교육기관 관련자 : 대학교수, 초등학교원 등 6. 기타 : 목사, 해병전우회, 문화센터관리, 육군원사전역 등				

- 직원의 조직인력현황은 ‘간사’ 와 ‘총무·홍보 등을 포함한 직원’이 10.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팀장’ 과 ‘사무국장’ 8.3%, ‘부장’ 6.3%, ‘동료상담가’ 4.2%, ‘단장’, ‘자문위원장’, ‘노인대학장’, ‘행정국장’ 2.1%로 나타남
- 직원 상근여부를 응답한 26명 중 ‘상근’이 72.2%, ‘비상근’이 27.8%로 분석됨
- 직원의 주요 경력으로는 복지시설 근무, 민간기업 사무실 근무, 장애인단체활동, 복지거버넌스 사회적일자리 위원, 교육협동조합 근무, 구청 현장민원실 및 공무원 근무, 초등학교원 등으로 분석됨

〈표 III-45〉 조직인력현황-직원

(단위: 명,%)

직위분류	빈도	비율	상근	비상근
간사	5	10.4	16(72.2%)	10(27.8%)
팀장	4	8.3		
단장	1	2.1		
부장	3	6.3		
자문위원장	1	2.1		
노인대학장	1	2.1		
사무국장	4	8.3		
행정국장	1	2.1		
동료상담가	2	4.2		
직원(총무, 홍보 등)	5	10.4		
무응답	21	43.7		
총계	48	100		
주요경력				
1. 복지시설 관련자: 지역아동센터 근무, 노인재가센터 근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무 등 2. 민간기업 운영자 : 민간기업 사무실 근무 등 3. 민간단체 관련자 : 장애인단체활동, 복지거버넌스 사회적일자리 위원, 교육협동조합 근무 등 4. 공공기관(단체) 관련자 : 구청 현장민원실 근무, 공무원근무 등 5. 교육기관 관련자 : 초등학교원 등				

2) 2022년 현재 추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비영리민간단체 중에는 사업의 대상으로 장애인으로 하는 단체가 가장 많음
 - 사업대상으로는 ‘장애인’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 25.0%, ‘취약계층’ 16.7%, ‘아동·청소년’, ‘지역주민’, ‘기타’ 4.2%로 나타남
 - 기타사업대상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자활센터 등으로 분석됨

〈표 Ⅲ-46〉 사업대상

(단위 : 개소,%)

사업대상	빈도	비율
노인	12	25.0
장애인	20	41.7
아동·청소년	2	4.2
취약계층	8	16.7
지역주민	2	4.2
기타	2	4.2
무응답	2	4.2
사업대상 1. 기타: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자활센터 등		

□ 사업유형

-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내용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활동으로 규정하므로 딱히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매우 다양함
 -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사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사업범위에 대한 지침이나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사업유형으로는 ‘지원사업’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사업’ 16.7%, ‘무료급식사업’과 ‘기타’ 12.5%, ‘상담사업’과 ‘캠페인(자원봉사)’ 4.2%, ‘환경개선사업’ 2.1%로 나타남
 - 상담사업으로는 동료상담, 위기전화상담 등으로 분석됨
 - 무료급식사업으로는 노인대상 무료급식 등으로 분석됨

- 환경개선사업으로는 미화원 쉼터개선 등으로 분석됨
- 교육사업으로는 장애인인권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평생교육, 청소년발달장애학생 교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등으로 분석됨
- 캠페인(자원봉사)사업으로는 어린이날 부스운영 및 자원봉사, 반찬나눔 봉사활동, 등으로 분석됨
- 지원사업으로는 학자금 및 생필품지원, 밀반찬지원사업, 독거노인 정서심리안정지원, 경로당프로그램 지원, 장애인정보화지원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이불교체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분석됨

〈표 III-47〉 사업유형

(단위 : 개소,%)

사업유형	빈도	비율
상담사업	2	4.2
무료급식사업	6	12.5
환경개선사업	1	2.1
교육사업	8	16.7
캠페인(자원봉사)	2	4.2
지원사업	21	43.8
기타	6	12.5
무응답	2	4.2
<p>*사업명 1순위를 기준으로 분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담사업: 전화전문상담, 동료상담 등 2. 무료급식사업: 노인무료급식, 독거어르신 영세장애인 무료급식 등 3. 환경개선사업: 미화원 쉼터 개선 등 4. 교육사업: 장애인인권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장애인평생교육, 청소년발달장애학생 교육,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장애인 직업재활교육 등 5. 캠페인(자원봉사): 어린이날 부스운영 및 자원봉사, 반찬나눔 봉사활동 등 6. 지원사업: 학자금 및 생필품지원, 밀반찬지원사업, 독거노인 정서심리안정지원, 경로당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정보화지원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이불교체지원사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7. 기타: 경사로 설치사업, 3대 기능(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임가공, 미아보호소 운영, 장애인예능제 등 		

□ 사업기간

- 대부분의 사업이 1년 단위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 또는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2022년 추진 중인 사업기간은 '2022년1월1일~2022년12월31일'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22년1월3일~2022년12월31일' 35.4% 로 분석됨

〈표 Ⅲ-48〉 사업기간

(단위 : 개소,%)

기간	빈도	비율
2022년1월1일 ~2022년6월30일	1	2.1
2022년1월1일 ~2022년12월31일	18	37.5
2022년1월3일 ~2022년12월20일	1	2.1
2022년1월3일 ~2022년12월31일	17	35.4
2022년3월1일 ~2022년5월30일	1	2.1
2022년3월1일 ~2022년11월30일	1	2.1
2022년3월1일 ~2022년12월31일	1	2.1
2022년4월1일 ~2022년11월30일	1	2.1
2022년5월1일 ~2022년10월31일	1	2.1
2022년5월1일 ~2022년12월31일	1	2.1
무응답	5	10.4
총계	48	100.0

□ 사업예산

-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의 평균금액은 도비가 46,906천원, 시·군비가 199,152천원, 자부담이 10,966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보조금 평균총액은 95,662천원으로 나타남
 - 복지정책과에 소속되어 관리하는 단체는 사업의 성격과 성격에 따른 지원 비용의 정도를 단계별, 대상별, 사업량별 등으로 구분을 두어 지원하고 차후 지원금액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표 III-49〉 사업예산

(단위 : 천원)

도비(N=8)	시·군비(N=15)	자부담(N=11)	보조금 평균총액(N=27)
46,906	199,152	10,966	95,662

□ 사업추진경과

- 2022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 평균대비량은 48.1%로 나타남.
 - 1년 단위로 사업비를 제공하고 마지막 예산대비 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표 III-50〉 사업추진경과

(단위 : %)

사업예산	평균 추진경과 (N=23)
2022년 5월 현재 목표 사업량 대비 추진사항 등	48.1%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에 대해서 ‘예’로 응답한 비율이 93.7%, ‘아니오’로 응답한 비율이 6.3%로 조사됨

〈표 III-51〉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경기도의 지원 필요여부

(단위 : 개소,%)

문항	빈도	비율
예	45	93.7
아니오	3	6.3
총계	48	100.0

□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으로는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이 39.1%로 요구가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단체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역량강화)’ 17.2%,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14.1%,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10.9%, ‘기타’ 9.4%, ‘단체의 컨설팅 업무’, ‘단체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과 ‘단체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이 3.1%로 조사됨
- 기타내용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 행정 보조인력 지원 등으로 응답함

〈표 Ⅲ-52〉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

(단위: 개,%)

내 용	빈도	비율
단체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역량강화)	11	17.2
단체의 컨설팅 업무	2	3.1
단체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2	3.1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7	10.9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9	14.1
단체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25	39.1
단체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2	3.1
기타	6	9.4
계	48	100.0
기타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2.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 3. 행정 보조인력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교육훈련 지원 필요영역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교육훈련의 내용 중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복지사업 업무전문성향상을 위한 역량강화’가 45.8%로 필요성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교육’ 37.5%,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관련 교육’이 14.6%로 조사됨

〈표 III-53〉 교육훈련 지원 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 관련 교육	7	14.6
복지사업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22	45.8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교육	18	37.5
기타	1	2.1
계	48	100.0

□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컨설팅지원 필요영역

-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비영리 공익 활동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계획서 첨삭지도’가 43.4%로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24.5%,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후원금 금·품관리에 관한 사항’ 13.2%, ‘기타’ 5.7%로 나타남
 - 보조금 사업 이외에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등에 대한 공통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계획 및 수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II-54〉 컨설팅 지원 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보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3	24.5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13.2
후원금 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13.2
비영리 공익활동 공모사업 정보제공 및 사업계획서 첨삭 지도	23	43.4
기타	3	5.7
계	48	100.0

□ 비영리민간단체의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필요영역

- 비영리민간단체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물품 공급’이 52.1%로 필요성이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방역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29.2%, ‘자체방역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12.5%, ‘방역 전문기관의 방문’ 6.3%로 조사됨

〈표 Ⅲ-55〉 감염병확산 예방 지원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물품 공급	25	52.1
방역 전문기관의 방문	3	6.3
방역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14	29.2
자체방역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6	12.5
기타	0	0.0
계	48	100.0

□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 지원필요영역

-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단체의 홍보 및 연구를 위한 소요비용 제공’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체의 홍보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연계’ 30.6%, ‘단체의 종사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이 26.5%로 조사됨

〈표 Ⅲ-56〉 홍보 및 연구 지원필요영역

(단위 : 개,%)

내 용	빈도	비율
단체의 홍보 및 연구를 위한 소요비용 제공	21	42.9
단체의 홍보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연계	15	30.6
단체의 종사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13	26.5
기타	0	0.0
계	48	100.0

□ 비영리민간단체의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지원필요영역

- 비영리민간단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타 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웹) 설치와 운영’이 28.6%로 수요가 가장 높았음
- 그 다음으로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협회 등) 구성’ 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제공’ 24.5%, ‘타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 마련’이 20.4% 로 조사됨
- 단체의 등록을 받을 때부터 경기도 내 단체 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 형태의 네트워크를 준비해야 함
 - 예를 들어, 경기도 정보사이트 데이터 드림 또는 경기복지 플랫폼 등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환경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표 III-57〉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필요영역

(단위: 개,%)

이유	빈도	비율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협회 등) 구성	12	24.5
타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 마련	10	20.4
타 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웹) 설치와 운영	14	28.6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제공	12	24.5
기타	1	2.0
계	48	100.0

□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필요영역

-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영역으로 ‘회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단체에 지원’이 62.3%로 가장 많은 요구였음
- 그 다음으로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28.3%, ‘단체 회원 대상 공익 활동에 대한 포상제도’ 7.5%, ‘기타’ 1.9%로 조사됨
- 그러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성과를 측정하거나 사용처를 증명하는 것이 또 다른 행정업무를 만들고 확인할 방법이 모호하므로 채택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

〈표 Ⅲ-58〉 회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지원필요영역

(단위 : 개,%)

이유	빈도	비율
회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단체에 지원	33	62.3
단체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15	28.3
단체 회원 대상 공익활동에 대한 포상제도	4	7.5
기타	1	1.9
계	48	100.0

□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심리상담 지원필요영역

- 비영리민간단체 회원들의 심리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단체 회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이 50.0%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단체의 회원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연계’ 27.8%, ‘단체의 회원이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검사지(진단) 비용 제공’과 ‘단체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파견’이 11.1%로 조사됨
 - 각자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단체 회원 및 종사자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만이 가지는 업무 특성이나 고충을 먼저 조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함

〈표 Ⅲ-59〉 심리상담 등 지원 필요영역

(단위 : 개,%)

이유	빈도	비율
단체의 회원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연계	15	27.8
단체의 회원이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검사지(진단) 비용 제공	6	11.1
단체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파견	6	11.1
단체 회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	27	50.0
기타	0	0.0
계	48	100.0

□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 비영리민간단체들에서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교육을 강사연계 또는 교육기관을 연계하여 받기를 원함
 -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닌 수시/장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고 회계 등 필요에 의한 맞춤형 교육을 필요로 함

〈표 III-60〉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 교육훈련 방식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중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의 집합교육이 필요
비영리법인의 종사자 대부분이 보조금집행과 관련된 회계 업무처리에 취약한바 정기적인 회계교육 지원이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신청 방법 교육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업무, 인적자원 활용방법 교육
공무원의 교육이 필요하며, 간부들에게 봉사단체의 실효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전문기관의 파견을 통한 비영리 민간단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
동일 지역 내 장애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단체 교육방식을 시행 필요
동종의 단체를 모아 단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 방식으로 추진 벤치마킹 프로그램 지원 등 맞춤형 교육 지원 필요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교육 자료(책자 또는 영상)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 질의 사항 발생 시 수시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함.
종사자 번아웃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힐링 서비스 지원 제공 또는 각 종사자별 개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 지원

□ 컨설팅 분야 및 방식

- 비영리민간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회계관리가 필요하는 의견이 많고 후원금 모금을 위한 컨설팅을 받고자 함
 - 또는 단체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있음

〈표 III-61〉 비영리민간단체 컨설팅 영역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단체가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떤 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십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정보공유 및 제공 참여를 위한 플랫폼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와 업무 보조
회계관리, 사업 운영에 관한 컨설팅
후원금모금 및 관리에 대해 컨설턴트를 연계 지원
경기도 내 자치 시 기준으로 집합교육, 회계 및 사업지침 내용
단체가 원하는 컨설팅에 대한 비용 지원
단체에 맞는 회계관리, 후원금 관리 등 표준화된 내용을 가지고 연계 컨설팅
온라인 교육 활성화 및 사업 지침 공유
원금 모금 및 지원공고에 대한 지원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원함
홍보분야, 후원금모금 및 관리, 회계분야
회원기관들의 노무, 세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마련

□ 홍보 및 연구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는 홍보와 연구 관련 지원으로서 타 지역의 비영리단체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와 홍보비용 지원을 필요로 함
 -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과 교육사업에 필요한 도구 등에 수요가 많음

〈표 III-62〉 단체의 연구와 홍보 지원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물 제작법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설문 및 연구 필요(봉사원 및 봉사활동 희망자 대상) 지역 취약계층 수요 분석 필요(지역 취약계층 대상)
각종 위원회 활동 활성화 및 유지·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교육사업에 필요한 각종 도서 및 컴퓨터 관련 지원을 원함
기관 리플렛 제작비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원**

- 타 기관과 상호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공유와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적사업이 같은 단체들이 연합할 수 있는 협의회의 구성, 지역별 네트워킹, 단합대회 등과 같은 연합의 장 마련이 필요해 보임

〈표 III-63〉 유관기관 협력체계 지원 요구 및 의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은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수기관 사례발표 및 정보교환 (연 1-2회)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동료지원가), 취업연계, 사례관리
비영리 단체인 민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의 협업에 필요한 소통을 위한 지원, 민관 연합 연수, 교육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기관과 개인 회원 간의 상호 견제와 역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단체복이나 단합대회, 또래 직원들 간의 교류 사업에 지원 20대/30대/40대 종사자
목적사업이 같은 단체들의 협의회 구성
사회봉사활동 연계 플랫폼 구축
시 또는 도청에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과적
지원사업별 지역 네트워킹
타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
타 단체와의 교류
탈시설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시설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의 장 마련
프로그램 공유 지원
플랫폼 및 공동교육

□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동아리 활동비 지원, 여행지원 및 휴가지원, 워크숍과 상담에 관한 욕구가 많음
 - 심리상담이나 자조모임, 힐링캠프(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64〉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단체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힐링프로그램 지원 및 비용 지원, 심리상담비용 지원
힐링캠프 지원, 장기근속수당 지급, 동아리 활동비 지원
회원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연계 회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단체에 지원
단체 소속 회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은 단체별 개별지원 및 통합지원으로 평소 시간 내기 힘들어 가지 못했던 여행지원 및 휴가지원
단체 역량강화 및 화합을 위한 워크숍 지원 필요
반기별 관련 부문 회원들을 초청하여 전시회 및 견학을 필요로 함
복지포인트 도입 필요, 비용적인 보상
사기진작 및 심리상담의 지지를 위한 기관과 연계 및 상담전문가 파견
워크숍 및 견학 등 단합 행사

□ 비영리민간단체 희망지원 사업

- 경기도 차원의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고 시설에 대한 보수와 사무용품에 대한 필요가 많았음

〈표 III-65〉 경기도 단체 지원에 관한 요구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도지사가 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사자와 가족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위기가족 지원, 지속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원
노후시설의 보수 또는 사무실 이전
단체 사업을 보조해줄 수 있는 간사 인력비 지원
단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미화원 쉼터개선, 노후 주택개선(취약계층)
사각지대 대상의 지원 예를 들어 경계선지능 아동들에 대한 예산, 교육 등의 체계적 지원
사무용품이 적극 필요함
열악한 보수를 보충하기 위한 처우개선비 인상
우수단체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한 자원봉사익식 함양
조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연속사업

□ 경기도 단체 지원사업의 수준

- 예산은 최소 2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를 기대하며 심리상담이나 자동차 제공을 필요로 하기도 함

〈표 III-66〉 경기도 단체 지원 희망 수준

질문 및 답변내용
질문)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십니까?
3,000만원
1회 워크숍 300만원
500만원 이내 (자부담 비용 및 회계처리 간소화 조건)
90%(자부담 10%)
사업비에 최소 50%라도 지원이 필요함
인건비, 새알용품 구입비 등 월 100만원
2000~3000만원
단순 단체나 법인에서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양하고(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동모금회 활용) 단체나 법인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춘 사업에 대해 지원하였으면 함
서울시 수준
연 5천만원정도
연 예산 3억정도
연속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 활성화 필요(연간 5,000만~6,000만)
예산 요구액에서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정관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 필요
지역 내 공익활동 및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4. 소결

□ 법인의 운영 및 지원의견

-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경기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제외하고도 여러 종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운영규정 마련을 위해 정보획득을 필요로 하며 법인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현재 법인 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법인 종사 대상 운영, 재산관리를 위해 매뉴얼 제작 및 배포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에 이룸
- 법인지원 영역으로 법인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6.9%로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가 24.7%였음
 - 정례적인 교육과정을 두고 담당자, 법인의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세무/회계, 노무 등의 기준이 시·군의 담당이 바뀔 때 달라지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더불어 교육에 사용하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법인의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부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매뉴얼 제작 및 배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음
 - 또 법인을 컨설팅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15.9%로 세 번째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
 - 특히, 종사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57.8%에 달하였고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영역은 법인의 세무·회계 영역임
-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경기도 전체 차원의 법인 간 정례적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법인 간 정보공유를 위한 웹(web) 또는 온라인 플랫폼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1.8%에 달하고 있음
 - 타 법인 등과 교육할 수 있는 기회와 장 마련(20.1%),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 수 있는 비용을 제공(17.9%) 등의 의견도 있음
 - 지역사회 내 법인 간 종사자들의 동아리 활동 지원, 연수 또는 간담회, 세미나를 통해 교류하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그 활용도는 전문지식을 교환하고 법인운영과 관련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개설에 있음
-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임금체계와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의견은 45.6%에 이르렀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하는 방식을 25.9%가 제안하고 법인 근로자만을 위한 복지수당에 찬성한 비율이 15.8% 였음
 - 법인의 근로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기관을 연계(25.8%)하고, 심리검사 비용을 경기도가 지급하는 방식(15.0%)에 대한 의견도 있음
 - 복지에 기여하는 법인 종사자만을 위한 견학프로그램,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음
 -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캠프참여, 문화생활 지원, 복지수당 지급, 전담 상담원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임금체계와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이러한 의견은 45.6%에 이르렀으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하는 방식을 25.9%가 제안하고 법인 근로자만을 위한 복지수당에 찬성한 비율이
- 경기도가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보전이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의미 있는 의견들이 있음
- 목적사업 내에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마련하고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사회복지시설처럼 공익근무요원 등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보조인력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 사회복지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을 100%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경기도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다 실제 인력을 고용하는 시설, 기관들과 협의가 있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의견

- 활동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많음
 - 2011년 이후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37.5% 정도 되고 2000년 이전부터 활동한 단체도 27.1%에 이룸
 - 나머지 단체들도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목적사업은 취약계층 복지사업이 35.4%, 장애인복지 31.3% 등으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무료급식이나 식품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학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학자금 및 생필품 지원, 독거노인 지원, 장애인 복지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밑반찬 제공, 장애인 정보화, 노인 정서심리안정 등 사업의 유형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가 27.1%로 가장 많음
 - 비영리단체지원법에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게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가지되 중복지원의 여지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임
-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대상은 장애인이 가장 많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상 유형별로 단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원의 내용 또한 다양함
 - 경기도에서 복지국 소속(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등)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축할 때는 현재 타 제도권 안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구분되는 것일 필요가 있음
 -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와 참여할 수 있는 기관 등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주로 연 단위 사업을 공모하는 결과 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기간이 단년도이고 필요에 따라 다년도 지속사업에도 응모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필요함

-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경기도에서 지원받기를 바라는 내용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이었음
 -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역량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17.2% 그 다음임
 - 컨설팅은 한다면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사업계획서 첨삭 지도(43.4%)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음
 - 종사자뿐만 아니라 단체소속 회원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62.3%)에 대한 의견 많았고 캠프, 자조그룹 등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지기반에 대한 수요가 50.0%였음

□ 실태조사와 결과의 한계점

-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응답률 제고 불가능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사업수행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며 이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정책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속할 때 발전적 변화 가능
 - 경기도가 계획하는 지원의 범위와 법인 및 단체가 받기를 원하는 지원의 범위가 다르므로 조율과 합의 필요
 -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의 보조 등은 일단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광범위한 제안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명백한 근거마련을 조례로 같음할 것인지 결정 필요
 - 조례에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 현실적으로 단기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할 내용의 사업이 존재함
 - 큰 규모의 예산 추계와 경기도와 시군 간의 동의 및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매칭 사업 등은 경기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함

IV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1. 연구요약 및 함의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향

IV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1. 연구요약 및 합의

1) 연구의 요약

□ 연구개요

- 본 연구는 2021년 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기로 하여 경기도가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지원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실시되었음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사업 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인함
 - 민법,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을 검토함
 -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도에 설립허가 받으며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요경비를 “사업비”로 지원받음
 - 경기도가 사회복지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받음
 -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나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지자체로부터 지원과 평가의 대상이 됨

- 따라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함
- 경기도 내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 법인 및 시설, 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시·군을 통해 지역 내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설문지 배포
 - 설문지를 포함한 공문시달, 우편을 통해 직접 송달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담당자가 직접 연락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설문지 업로드
 - 시·군별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2회 이상 전화 안내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전체 대상 기관 수의 22%가 응답한 내용을 분석하였음

유 형	전체 개소 수	응답 개소 수
사회복지법인	184	79(43%)
사단법인	187	36(19%)
재단법인	9	5(56%)
계	380	120(32%)
비영리민간단체	374	48(13%)

□ 조사결과 및 시사점

- 법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에 필요한 영역 및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목적은 조사자체가 최초 시도임을 감안하여 조례에 제시한 제6조(지원사업 등)의 범위 내에서의 요구와 그 이외의 필요를 파악하고자 하였음
- 경기도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은 경기도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제외하고도 여러 종류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
- 법인지원 영역으로 법인 근로자의 복지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 법인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경기도 전체 차원의 법인 간 정례적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법인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임금체계와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 경기도가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은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보전이었으나 이를 제외하고도 의미 있는 의견들이 있음
- 비영리단체의 활동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많음
- 비영리단체의 주요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학자금 및 생필품 지원, 독거노인 지원, 장애인 복지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대상은 장애인이 가장 많고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경기도에서 지원받기를 바라는 내용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이었음
-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기 어려움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응답률 제고 불가능
 - 경기도 내 사회복지 사업수행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확고히 하고 실태조사를 정례화하며 이후 조사결과를 반영한 정책계획 수립과 시행을 지속할 때 발전적 변화 가능
 - 경기도가 계획하는 지원의 범위와 법인 및 단체가 받기를 원하는 지원의 범위가 다르므로 조율과 합의 필요
 - 인건비 지원, 사업 예산의 보조 등은 일단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광범위한 제안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명백한 근거마련을 조례로 같음할 것인지 결정필요
 - 조례에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 현실적으로 단기 내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할 내용의 사업이 존재함
 - 큰 규모의 예산 추계와 경기도와 시군 간의 동의 및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매칭 사업 등은 경기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은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요함

-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업 수행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파악을 시도하는 최초의 조사가 진행되었음
 - 2021년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된 이래 처음 수행된 조사활동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향후 이 조례에 대한 홍보와 계획 수립 및 시행이 거듭되면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2) 법인 및 비영리 단체의 요구

□ 지원요구 영역

- 종사자 및 사·군 담당자 역량강화
 -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은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특히 법인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음
 - 지원법인은 정기적인 집합교육을 통해 직원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되 특히 법인의 정관변경, 재산관리 등 법률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인 운영 관련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 제작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음
 - 연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여 종사자들이 신청, 교육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 세무·회계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방법에 있어서는 컨설턴트를 경기도에서 풀을 구성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함
 - 회계관리에 대한 컨설팅이 각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규정과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구성 요청
 - 컨설팅 영역은 수익사업, 보조금사업 개발과 운영, 지침 마련, 전문적 홍보 등에 관한 것임
- 협의기구, 플랫폼 등 정보공유
 - 법인과 단체가 유사유형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법인 협의회 등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공식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경기도와도 협조할 수 있는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모임과 회의를 위한 비용 등의 지원이 필요함

- 홈페이지 등 정보교류를 위한 온라인 장소 마련을 제안하고, 상호 벤치마킹 정보공유를 통한 자연스러운 컨설팅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전체 홍보 사이트 개설 제안
- 더불어 법인과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상담사 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음

○ 종사자 복지증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경우처럼 지역 내 법인 및 단체의 종사자들의 동아리 활동, 연수 또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요구가 높았음
 - 무료 견학, 연수, 법인 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등 도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 상설 등
-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와 정보 교환을 위한 워크숍 등 주기적인 간담회 진행에 대한 의견도 있음
- 종사자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체계와 같도록 조정하고,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요구도 많음

○ 경기도 차원 희망사업

- 법인 업무용 기자재 지원, 근로자 상담지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
- 법인 등 목적사업과 관련한 공모사업 추진
-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100% 인정
- 법인 및 단체 대상 포상사업 등

2.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 방향

1) 법인 등 공공성 강화

□ 조례개정

- 지역별 지원현황에서 확인하였듯이 법인 등을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지자체 조례는 경기도의 조례가 유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내용을 더욱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의 대상, 조건,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추는 것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조례는 “비영리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단체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듯 보임
 - 조례 제2조(지원대상 등)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 단체”로 대상을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의 유형, 사회복지사업의 정의부터 분명하게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를 인용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정의되고 있는 만큼 시설은 조례 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비스 직접 제공 기관으로서 법인과 격이 다르며 재정구조가 정부의 보조금 지원체계에 있으므로 정부의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법인이 정한 목표와 사업계획을 실천하므로 법인과 동일시 될 수 없음
 - 시설은 이미 사회복지사업이 근거가 되는 지원과 관리를 받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재무회계 규칙 등에 의해 전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평가까지 받고 있으므로 법인이나 단체와 더불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에도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과 관리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음
- 비영리법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정의 내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묶이는데 무리가 있음
- 따라서 민법을 적용받는 법인은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 구체화 및 실행

-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포함)은 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주체 전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안 필요
 - 현재까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은 강조되어 왔으나 실제 시설을 공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았음
 - 그러나 법인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17)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받고 각종 세법에 의해 비과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갖추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따라서 공공성 확보 측면, 전문성 유지, 종사자들의 역량 담보 등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원 또한 주어져야 함
- 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개소 수에 따라 시설 자체의 이용자 규모, 서비스 사업 내용,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시설법인 중 시설 1개소를 운영하는 법인이 있고 수십 개의 시설을 맡아 운영하는 법인들이 있음
 - 민간단체 역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주민의 수, 사업예산 등이 규모를 결정짓게 되며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에너지가 다름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 지원법인을 구분하고 또 시설법인 중에서도 운영하는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운영하는 시설의 유형이 다양할수록 법인의 역할이 중요

17)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하고 영세한 1시설 운영법인에도 다른 욕구가 있을 것이므로 지원 대상 선정 때부터 지원의 설계가 다르게 고려되어야 함

-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한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내용적 측면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지역, 서비스 대상, 사업의 목적을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단체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 또한 함께 명시하여 재정 활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음
- 1년 단위로 사업비를 제공하고 마지막 예산대비 지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분기 또는 반기로 나누어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컨설팅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이후 지원의 효과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법(평가 등)을 같이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무엇보다 지원의 사회적 효과는 지원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질적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향상, 실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측정할 수 있음
 - 이에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등은 지원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드시 하여 공개할 것을 제안함
- 중·장기 지원계획과 더불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함
 -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연차별 계획 수립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 지원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수요자 욕구 파악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내 복지 수요의 욕구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을 행정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 필요
 - 예를 들어, 단기계획은 3년 안에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은 3년 단위 2차(6년), 3차(9년)까지 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함

2) 법인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 사업

- 경기도 31개 시·군의 법인 등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세분화 하여 운영
 - 현재 경기복지재단 교육팀을 통해 운영되는 교육사업으로 비영리법인 담당 공무원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기간, 내용, 의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이 미약한 측면이 있음
 - 법인 정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지도점검 등 교육하는 형태로 내용이 방대함
 -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담당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보다 세분화 하여 교육과정을 수립
 - 이전에 교육과정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수요파악을 선행하여 필요에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무원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담당공무원의 교육참여를 의무화 하거나 교육 점수 등을 부여하여 해야 함
 - 컨설팅 업무는 모든 경우를 컨설팅 할 수 없으므로 컨설팅을 원하는 법인, 원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예산과 인력의 소요비용을 한계지어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컨설턴트는 경기도 차원에서 관련 분야의 컨설턴트를 인력풀로 구성하고 특히, 회계에 대한 요구가 많으므로 회계사를 확보하여 외부회계 감사를 지원하는 사업도 가능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같은 사회복지 영역의 전문가를 연계하는 것도 가능
- 종사자들 대상 교육을 따로 구성하고 권역별로 또는 법인유형, 규모별로 구분을 두고 교육을 실시
 - 북부와 남부, 사회복지법인(시설법인), 사회복지법인(지원법인), 재단/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로 대상을 세분하고 교육의 내용 또한 정확하게 한정된 범위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이후로도 지속 훈련이 가능하도록 강사와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 수시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에도 활용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침 또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작업도 필요함
- 법인 및 단체 종사자들과 담당공무원들을 위한 업무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는 과정 필요

- 조사결과에서도 보듯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제시된 지침 보급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특히, 재무·회계 영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강하며 법인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을 감안하여 시기적으로 단계별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종사자와 담당공무원의 업무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지원영역 확정 및 점진적 확대

- 우선은 경기도 조례 명시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함
 - 먼저, 실태조사 결과에서 필요성이 높고 요구가 많았던 영역에서부터 향후 종사자의 처우개선까지 대규모의 예산 설계가 필요한 부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영역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
 - 조례의 영역은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에서 합의를 찾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법을 통해 법인 간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기해야 함
 - 법인 유형에 따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책을 제안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은 현재까지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한 관리제도들에 따라 체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회계관리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군의 지도점검 등
 - 따라서 조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지원, 지지기반 마련 등에 중점을 두는 지원을 먼저 할 수 있음
 - 직원 교육이나 컨설팅 범위도 지역별, 내용별로 구분하여 실제 알고 싶은 내용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제공
 - 한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후원금 모금이나 홍보와 관련한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 연중사업 공모
 - 대부분 1년 이내의 사업을 매년 연초에 공모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1년 동안 경기도 사업을 할 수 없음
 - 연중 수시 공모를 통해 지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 3년, 5년 단위의 사업을

단체 대상으로 공모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들이 연합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 공모 필요
- 장기적인 사업으로서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업들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법인 근무경력을 현재는 80%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100% 모두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의견조사와 조율이 필요함
- 임금체계 통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복지 및 임금체계의 적용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나 이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성격의 지원인지 검토해야 함
- 공유 공간 마련
 - IT(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단체 봉사자들이 공유하면서 회계 등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대책 필요

□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사업

- 경기도에서 허가하여 운영되고 있는 법인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섹션을 제공하는 방안 가능함
 - 조사에서 법인들은 플랫폼,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법인 홍보 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 따라서 경기복지플랫폼(<https://ggwf.or.kr>)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포털을 활용하여 법인들의 정보를 업로드하고 지속적으로 변화 등을 업데이트 함으로써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등록 당시 각 단체의 메일계정 등을 확보하고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이를 적극 활용해주기 바람
 -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여 공지사항, 뉴스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시설과 관련한 공지까지 공유할 수 있음
- 단체와 소규모 봉사단체를 연계하는 협의체 구성
 - 근로자 사기 진작이나 복지증진 사업, 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지원 사업 필요
 -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종사자임을 증명할 경우, 심리검사 및 진단 과정에 드는 비용 지원
- 복지수당 지급
 - 법인 등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지급에 대한 의견도 많았음.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위확대 또는 다른 형태의 수당지급 사업을 염두에 둔 의견임

□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과 심리상담 등 지원 사업

- 법인 등의 종사자만을 위한 무료교육, 상담 등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사업이 가능할 것임
 -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설의 유형별로 수련회, 연찬회 등을 계획하여 워크숍 형식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와 같이 힐링캠프 또는 워크숍을 통해 무료견학, 문화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함
 - 또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지역 내 상담이 가능한 기관을 활용하여 심리검사 또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을 연계하는 방식의 간접 지원이 가능함
- 자체적으로 종사자에 대한 복지증진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환경인 법인 등의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각 법인 등의 설립자 또는 직원을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기여도를 보상하는 차원의 상과 부상을 제공함
 -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법인들은 개인시설로 시작하여 역사가 깊은 기관들이 있고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의 복지에 끼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우수법인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과정은 법인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홍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안이 될 수 있음

3) 지원과 관리의 효율성 도모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

- 일정기간을 두고 단위로 경기도 내 법인들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가능함
 - 연 1~2회 연찬회 또는 간담회(토론회, 정책회의) 등을 마련하고 경기도 복지정책과 등 담당부서가 법인과 관련한 정책 결정사항을 토론 및 논의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에서도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토론회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류하고 있음
- 다만, 이 사업을 주최를 담당할 곳을 결정하는 일은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 분야의 법인 및 단체의 간담회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식이 될 수 있음
- 또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협의회(협의체)를 구성하고 워크숍과 같은 네트워크를 위한 기회를 갖는데 사업비를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함
- 각 법인 등을 대표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한다면 차후 공공과의 공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공지와 협조를 받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임

□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경기도 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의 허가권자인 도는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비정기적 점검 이외 관리방안이 필요함
 - 법인 등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면 이와 연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설립 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인가, 임원 임면보고, 감사추천 업무 이외에도 지원의 효율성 관리에 대한 책임이 생김
 - 사회복지사업법과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에 법인과 단체를 포함하는 추가개정에 따라 관리 가능

□ 그 밖에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법인에 사무국이나 상근종사자가 없는 경우가 30%가 넘음
 -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법인 인력과 시설인력의 겸직을 인정하는 등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능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 김 인(2013). 『사회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정부 보조금 지원방식, 법인 거버넌스구조 및 시설운영상의 특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31.
- 김진우(2013). 『사회복지법인 제도신설 배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137-156.
- 김형수(2007). 『한국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의 유형분류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형수(2014). 『비영리사단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고찰』. 광신논단, 24권 217-303.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보건복지부(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 송호영(2020).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 신경안(2019). 『지방분권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과 사회복지관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개선방향과 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2). 1145-1154
- 윤석진(2018). 『정부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전략과 입법과제』. 사회복지법제연구, 9(3). 1-36.
- 윤희숙(2017). 『사회복지법인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봉주 외(2017). 『공공민간복지자원 현황 분석과 모금회의 발전방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나눔연구팀.
- 이재원, 오영삼(2018). 『복지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인식분석과 복지재정 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GRI연구논총, 20(4). 199-225.

국가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law.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시스템 <https://glaw.scourt.go.kr/>

부록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표는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와 협조하여 수행하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방안」 연구를 위하여 제작, 배포된 것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내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법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법인 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법인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하여 법인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으로 부터의 지원에 대한 욕구를 확인하여 예산/비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함으로써 경기도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리라 생각되지만, 조사표 내용을 읽어보시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법인 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2. 05

● 문의

경기복지재단 유정원 연구위원(031-267-9363, voiced@ggwf.or.kr)

경기복지재단 강보민 연구원(031-267-9377, kbom@ggwf.or.kr)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1.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A. 경기도 사회복지사업¹⁸⁾ 법인 현황

1) 법인 정보

소속 지역	_____시·군	법인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① 사회복지법인 시설운영법인 <input type="checkbox"/> ② 사회복지법인 지원법인 <input type="checkbox"/> ③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④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⑤ 종교법인
법인 설립 시기	<input type="checkbox"/> ①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3년 이상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10년 이상 20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20년 이상		
목적사업	사업명 3~5개	수익사업	사업명 3 ~ 5개

※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칸을 추가해서 작성해주세요.

2) 보조금¹⁹⁾ 지원여부(지원년도 2021년 기준, 보조금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지원 금액	총 _____ 원		
지원 처	시·군	경기도	국비(중앙정부)
금액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3) 기본재산 현황 (※ 법인 기본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세요)

종류	평 가 액	비고
총계	<input type="checkbox"/> ① 3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3억원 이상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0억이상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100억원 이상	
부동산	<input type="checkbox"/> ① 3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3억원 이상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0억이상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100억원 이상	
현금성 기본재산	<input type="checkbox"/> ① 3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② 3억원 이상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③ 10억이상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④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⑤ 100억원 이상	
기타		

1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업”이란 각 목의 범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는 보조금을 의미함.

4) 종사자 현황

상 근 (전담 사무국)				비상근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input type="checkbox"/> 있다		<input type="checkbox"/> 없다	
명				명			
도·시군 보조금 인력		명		도·시군 보조금 인력		명	
법인 대표				사무국장 사무국 직원			
<input type="checkbox"/> ①법인설립자	<input type="checkbox"/> ②이사장	<input type="checkbox"/> ③시설장	<input type="checkbox"/> ④겸직	<input type="checkbox"/> ①사무국장	<input type="checkbox"/> ②사회복지사	<input type="checkbox"/> ③간사	<input type="checkbox"/> ④겸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겸직예시 : ①+②, ②+③ 등으로 표시

5) 법인 운영시설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수 ²⁰⁾		
계	직영	위탁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input type="checkbox"/> ①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없다
	개소	개소

6) 운영 중인 분야별 사회복지시설 현황²¹⁾

시설 분야	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개소
아동복지시설	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정신보건시설	개소
노숙인시설	개소
사회복지관	개소
지역자활센터	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청소년복지시설	개소
기타	개소

20) 법인이 운영 주체로서 위탁받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수를 기재.

2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 안내 기준

2)-1 법인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 ① 법인 등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 ② 재산관리에 관한 컨설팅
- ③ 법인 종사자 대상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④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공통사항을 공유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 ⑤ 기타 ()

3) 법인의 인력운영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법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채용할 여력이 없음
- ② 법인 인력채용 및 운용에 관한 법적기준과 규정이 없음
- ③ 법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인력이 따로 필요치 않음
- ④ 운영 중인 복지시설 업무와 병행하는 것이 적절함
- ⑤ 기타 ()

3)-2 법인 인력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1)-3번으로 ② 아니오

3)-3 법인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자원은 무엇입니까?

- ① 법인업무 전담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또는 인건비 지원
- ② 인력채용 및 운영 안정을 위한 컨설팅
- ③ 법인 인력운영에 관한 지침 및 안내 제공
- ④ 법인과 시설 업무를 병행하는 종사자 대상 복지증진
- ⑤ 기타 ()

1)-3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법인 세무·회계
- ②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후원금·품 관리
- ④ 법인의 수익사업 개발 등
- ⑤ 기타 ()

1)-4 법인 등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물품 공급
- ② 방역 전문기관의 방문
- ③ 방역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 ④ 자체방역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 ⑤ 기타 ()

1)-5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법인 등의 홍보 및 연구를 위한 소요비용 제공
- ② 법인 등의 홍보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연계
- ③ 법인 등의 종사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 ④ 기타 ()

1)-6 법인 등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목적사업이 같은 법인 등의 협력 단체(협회 등) 구성
- ② 타 법인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 마련
- ③ 타 법인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웹) 설치와 운영
- ④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제공
- ⑤ 기타 ()

1)-7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복지제도와 임금체계 도입
- ②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
- ③ 법인 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 ④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포상제도
- ⑤ 기타 ()

1)-8 법인 등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법인 등의 근로자가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연계
- ② 법인 등의 근로자가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검사지(진단) 비용 제공
- ③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파견
- ⑤ 법인 등 근로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
- ④ 기타 ()

■ 법인 등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1) 법인 등의 지원 중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경기복지재단 비영리법인 및 담당공무원 교육

2) 법인이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떤 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십니까?

예) 회계관리, 홍보분야, 후원금모금 및 관리에 대해 컨설턴트를 연계

- 3) 법인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은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법인 등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6) 도지사가 법인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7)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십니까?

A.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조사표

1) 단체정보

소재지 (시·군)		단체형태	
설립연도			
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조직(인력) 현황	직위	주요경력	상근여부

2) 2022년 현재 추진 사업개요

사업유형	- 복지사업 분야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지역복지) 대상 등 - 사업내용
사업명	- 구체적인 사업명
사업기간	- 2022. 1. 3 ~
사업목적	- 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
사업대상	- 경기도민, 시·군민, 몇 명 등 사업량
사업예산	- 도비·시군비·자부담 비율과 금액
추진경과	- 5월 현재 목표사업량 대비 추진사항 등

1)-3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법인 세무·회계
- ② 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③ 후원금·품 관리
- ④ 법인의 수익사업 개발 등
- ⑤ 기타 ()

1)-4 단체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감염병 예방 방역을 위한 물품 공급
- ② 방역 전문기관의 방문
- ③ 방역을 위한 명확한 지침과 매뉴얼
- ④ 자체방역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 ⑤ 기타 ()

1)-5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단체의 홍보 및 연구를 위한 소요비용 제공
- ② 단체의 홍보 및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연계
- ③ 단체의 종사자 대상 교육과 컨설팅
- ④ 기타 ()

1)-6 단체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목적사업이 같은 단체의 협력 단체(협회 등) 구성
- ② 타 단체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와 장(場) 마련
- ③ 타 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웹) 설치와 운영
- ④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제공
- ⑤ 기타 ()

1)-7 단체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복지제도와 임금체계 도입
- ②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을 법인에 지원
- ③ 단체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수당
- ④ 단체 근로자 대상 포상제도
- ⑤ 기타 ()

1)-8 단체의 근로자 심리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단체의 근로자가 상담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 연계
- ② 단체의 근로자가 심리상담 받을 수 있는 검사지(진단) 비용 제공
- ③ 단체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전문가 파견
- ④ 단체 근로자 대상 힐링캠프, 자조그룹 운영 등 지지기반 마련
- ⑤ 기타 ()

■ 단체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1) 단체의 지원 중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경기복지재단 비영리법인 및 담당공무원 교육

2) 단체가 컨설팅을 받는다면 어떤 영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십니까?

예) 회계관리, 홍보분야, 후원금모금 및 관리에 대해 컨설턴트를 연계

- 3)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연구에 관한 지원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은 무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단체의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심리상담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합니까?

- 6) 도지사가 단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7) 경기도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을 기대하십니까?